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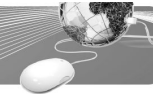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제·개정 일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1. 7.21 법률 제10885호 타법개정 2011.11.22 법률 제11101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전부개정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4호 타법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5호	전부개정 2012. 7.20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296호, 타법개정 2012.11. 1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317호, 일부개정 2013. 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호,



농산물 품질관리법령 제·개정 일자

농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1999. 1.21 법률 제 5667호	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16444호	제정 1999. 8. 9 농림부령 제1339호
일부개정 2000. 1.21 법률 제 6191호	타법개정 2001. 3.27 대통령령 제17165호	해양수산물부령 제129호
타법개정 2001. 1.26 법률 제 637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해양수산물부와그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1999.12.31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타법개정 2001. 1.26 법률 제 6380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2001. 5.29 대통령령 제17230호	타법개정 2001. 3.28 해양수산물부령 제185호 (해양수산물부와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타법개정 2001. 1.29 법률 제 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타법개정 2001. 6.22 대통령령 제17242호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 6.30 농림부령 제1389호
일부개정 2002. 1.14 법률 제 6595호	타법개정 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해양수산물부령 제182호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 6816호	일부개정 2002. 7.13 대통령령 제17674호	타법개정 2001. 7.31 농림부령 제1395호 (친환경농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8. 4 법률 제 7675호	일부개정 2003. 7.29 대통령령 제18071호	일부개정 2001.10. 8 농림부령 제1400호
타법개정 2006. 9.27 법률 제 799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타법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2. 7.22 농림부령 제1421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 8103호	타법개정 2004.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일부개정 2003. 9.25 농림부령 제1447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6. 1.16 대통령령 제19279호	일부개정 2006. 1.25 농림부령 제1515호
일부개정 2008. 6.13 법률 제 9117호	일부개정 2007. 6.26 대통령령 제20103호	타법개정 2006. 6.30 농림부령 제1529호
타법개정 2009. 2. 6 법률 제 9432호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7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6.29 농림부령 제1561호
일부개정 2009. 5. 8 법률 제 9667호	일부개정 2007.12. 6 대통령령 제20431호	타법개정 2008. 3. 3 농림수산물부령 제1호 (농림수산물부령과그소속 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6. 9 법률 제 9759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농림수산물부령과그소속 기관직제)	타법개정 2008. 6.20 농림수산물부령 제12호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호	일부개정 2008. 7. 7 대통령령 제20908호	일부개정 2008. 7. 8 농림수산물부령 제20호
타법개정 2010. 2. 4 법률 제10022호	타법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평생교육법시행령)	타법개정 2008.12.31 농림수산물부령 제55호 (농림수산물부령과그소속 기관직제시행규칙)
타법개정 2011. 5.19 법률 제10629호	타법개정 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 (식품위생법시행령)	
타법개정 2011. 7.25 법률 제10932호	일부개정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5호	

농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76호 타법개정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2010. 8.11 대통령령 제22332호 일부개정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1호 타법개정 2011. 7.19 대통령령 제23036호</p>	<p>일부개정 2009.11. 6 농림수산물부령 제91호 타법개정 2009.11.26 농림수산물부령 제94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12.17 농림수산물부령 제105호 타법개정 2010. 8.11 농림수산물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1. 3.30 농림수산물부령 제180호 일부개정 2011.12.30 농림수산물부령 제233호</p>



수산물 품질관리법령 제·개정 일자

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01. 1. 29 법률 제6399호 개정 2001. 3. 28 법률 제6458호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4. 9. 23 법률 제7219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04. 12. 31 법률 제7313호 2005. 5. 31 법률 제7570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 2006. 9. 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 1. 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 1. 26 법률 제8299호 2007. 4. 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제정 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 개정 2002. 3. 2 대통령령 제17528호 (해양수산물부위그소속기관직제)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 관리규정등 개정령)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8호 2006. 6. 30 대통령령 제19605호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9호 2008. 1. 25 대통령령 제20566호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75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농림수산물부위그소속기관직제) 2008. 8. 4 대통령령 제20950호 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1. 9. 1 해양수산물부령 제202호 개정 2002. 3. 9 해양수산물부령 제220호 2004. 2. 2 해양수산물부령 제267호 (해양수산물부위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2004. 8. 7 해양수산물부령 제277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 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5. 7. 28 해양수산물부령 제300호 2006. 6. 26 해양수산물부령 제340호 (행정정보공유및문서감축을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 2007. 10. 18 해양수산물부령 제386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공유수면 관리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2007. 12. 20 해양수산물부령 제396호 2008. 1. 25 해양수산물부령 제403호 2008. 2. 4 해양수산물부령 제408호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2008. 3. 3 농림수산물부령 제1호 (농림수산물부위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8. 8. 4 농림수산물부령 제26호 2008. 12. 31 농림수산물부령 제55호 (농림수산물부위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007. 4. 11 법률 제8365호 (약사법)</p> <p>2007. 4. 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p> <p>2007. 4. 11 법률 제8377호 (수산업법)</p> <p>2007. 8. 3 법률 제8624호</p> <p>2007. 12. 21 법률 제8789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p> <p>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p> <p>2008. 3. 28 법률 제9009호</p> <p>2009. 1. 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p> <p>2010. 1. 18 법률 제9932호 (정부조직법)</p> <p>2010. 2. 4 법률 제10022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p> <p>2010. 2. 4 법률 제10023호</p> <p>2010. 5. 25 법률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p> <p>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p> <p>2011. 7. 25 법률 제10932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p>	<p>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시행령)</p> <p>2010. 8. 4 대통령령 제22327호</p> <p>2010. 8. 11 대통령령 제22332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p> <p>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 감독을위한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p> <p>2011. 4. 4 대통령령 제22822호</p> <p>2011. 6. 7 대통령령 제22962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 직제)</p>	<p>2009. 6.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한시적행정규제유예등을위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등일부 개정령)</p> <p>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p> <p>2010. 8. 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4호</p> <p>2010. 8.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p> <p>2011. 3.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4호</p> <p>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p> <p>2011. 10. 2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5호</p> <p>2011. 12.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4호</p> <p>2012. 3.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p>



목 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수산물가공품의 기준) 4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1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 5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5	제3조 삭제 2
제4조(심의회 직무) 9	제4조(회의) 5	제4조(정보 제공) 9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7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8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9	
	제8조(위원의 수당 등) 9	
	제9조(운영세칙) 9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2장 이력추적관리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10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10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11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농산물우수관리</p> <p>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13</p> <p>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19</p> <p>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22</p> <p>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23</p> <p>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28</p> <p>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p> <p>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13</p> <p>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14</p> <p>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14</p> <p>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15</p> <p>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 점검 등) 17</p> <p>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17</p> <p>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19</p> <p>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19</p> <p>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20</p> <p>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21</p> <p>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22</p> <p>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23</p> <p>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26</p> <p>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27</p> <p>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8</p> <p>제23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29</p> <p>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32</p> <p>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32</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33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33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33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35
제3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		제3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36		제28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36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36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38
		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40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41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42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42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42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43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44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44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4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44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46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45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48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46
제4절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제4절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
제20조(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49		제40조(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49
제21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 등) 50		제41조(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 5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52		제42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절차) 51
제2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취소) 53		제4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방법 등) 52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2장 이력추적관리	제44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52
		제45조(유효기간의 연장) 53
제24조(이력추적관리) 54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54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54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60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56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63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58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63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59
제6절 사후관리 등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60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61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64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62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66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63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68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63
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조치) 69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68	제6절 사후관리 등
		제55조(승계의 신고) 6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리적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등록</p> <p>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70</p> <p>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75</p> <p>제34조(지리적표시권) 75</p> <p>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77</p> <p>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77</p> <p>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79</p> <p>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79</p> <p>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80</p> <p>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80</p> <p>제41조(「특허법」의 준용) 8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p> <p>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83</p> <p>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84</p> <p>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85</p> <p>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86</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리적표시</p> <p>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70</p> <p>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탈퇴) 71</p> <p>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71</p> <p>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73</p> <p>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80</p> <p>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8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리적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등록</p> <p>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70</p> <p>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72</p> <p>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73</p> <p>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75</p> <p>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75</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심판청구 방식) 87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87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89 제49조(심판의 합의체) 89 제50조(「특허법」의 준용) 90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87	제61조(심판청구서) 87 제62조(답변서의 제출) 87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88 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88 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88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88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89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89 제69조(심리 재개신청) 90 제70조(심판 비용) 90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51조(재심의 청구) 91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92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 표시권의 효력제한) 92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93 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93		제71조(재심청구서) 91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장 삭제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94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95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95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94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95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95	제72조 삭제 9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96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 96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장 위험평가	제5장 삭제
제60조(안전관리계획) 98		제73조 삭제 98
제61조(안전성조사) 99		제74조 삭제 99
제62조(시료 수거 등) 101		제75조 삭제 99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02		제76조 삭제 99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03		제77조 삭제 99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03		제78조 삭제 99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104		제79조 삭제 99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05		제80조 삭제 99
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106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106	제81조 삭제 99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69조(위생관리기준) 107		제82조 삭제 99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07		제83조 삭제 99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109		제84조 삭제 99
		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107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10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111		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111
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112		
제74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114	제24조(수산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114	제88조(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114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119		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119
제76조(조사·점검) 120	제25조(조사·점검의 주기) 120	제90조(조사·점검) 120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122	제26조(공동 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 120	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120
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123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122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122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123	
	제29조(중지·개선·보수명령 등) 123	제93조(생산·가공의 중지·개선·보수명령등) .. 123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1절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79조(농산물의 검사) 124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124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124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125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127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125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27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29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127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감독) 128
제82조(농산물검사기관의 자격 등) 130	제3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130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129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13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144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145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145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146 제96조(재검사) 146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147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143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144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145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145
제3절 검정		제3절 검정
제98조(검정) 148		제125조(검정절차 등) 148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149 제127조(검정항목) 149 제128조(검정방법) 150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150		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 150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150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153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153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조사·점검 등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154		
제102조(확인·조사·점검 등) 155	제35조(확인·조사·점검 대상 등) 155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103조(정보제공 등) 156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1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157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157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158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158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159	제36조(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159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 자격부여 등) 159	제37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160	제135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160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160	제38조(응시자격, 시험 과목·방법 및 합격기준) 161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160	제39조(합격자의 공고 등) 162	제136조(자격증 발급 등) 162
	제40조(자격증 발급 등) 162	제137조(자금지원) 163
제110조(자금 지원) 163	제41조(포상금의 지급) 165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163
제111조(우선구매) 164		제139조(수수료) 165
제112조(포상금) 165		
제113조(수수료) 165		
제114조(청문 등) 168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171	제42조(권한의 위임) 171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82	제43조(업무의 위탁) 182	
제9장 벌칙		
제117조(벌칙) 1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벌칙) 184		
제119조(벌칙) 184		
제120조(벌칙) 188		
제121조(과실범) 189		
제122조(양벌규정) 189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0	
제123조(과태료) 191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91	
부 칙 192	부 칙 192	부 칙 19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3.3.23></p> <p>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p> <p>가. 농산물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p> <p>나. 수산물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p> <p>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p> <p>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5.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의 환경을</p>		<p>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p>제3조 삭제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p> <p>6. “친환경수산물등”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p> <p>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p> <p>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p> <p>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p> <p>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p> <p>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p> <p>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p> <p>14.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p>	<p>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p> <p>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p> <p>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p> <p>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p>	<p>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p> <p>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심의회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p> <p>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p> <p>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p> <p>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p> <p>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p> <p>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p>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p>	<p>경우 이해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p> <p>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p> <p>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p> <p>4.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p> <p>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⑥ 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p> <p>⑦ 심의회는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p> <p>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부위원장”으로 본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p>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p> <p>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4조(정보 제공) 법 제4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p> <p>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p> <p>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p> <p>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p>		<p>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p> <p>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p> <p>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속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 연도(곡류만 해당한다) 5. 등급 6. 무게(실중량). 다만, 품목 특성상 무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농산물우수관리</p> <p>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p>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수(마릿수) 등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p> <p>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p> <p>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확 후 관리를 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p> <p>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p>		<p>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일 것</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로 한다.</p> <p>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규·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배 예정지 토지대장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13.3.23></p>		<p>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생산계획서</p> <p>3.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이하 “생산자집단”이라 한다)의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와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p> <p>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집단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 있다.</p> <p>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관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p> <p>⑦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소비자단체·유통업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p> <p>②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을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할 것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p>		<p>③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풋말 또는 표지판으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p> <p>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삼류: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p>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규·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p> <p>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집단의 대표자(생산자집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생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 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 		<p>자집단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재배필지(생산자집단의 경우 각 구성원이 소유한 재배필지를 포함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p>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p> <p>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p> <p>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p>		<p>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③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p>		<p>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p> <p>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013.3.23>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전화번호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인증지역 5. 유효기간 <p>⑧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p> <p>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 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p>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서 원본 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p>②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 		<p>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p> <p>6.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7.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된 경우</p> <p>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p> <p>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10. 그 밖의 사유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p>		<p>제23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p>		<p>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다.</p> <p>④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전화번호 3. 수확 후 관리 품목 4.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p>⑦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p> <p>⑧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p> <p>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정관 2. 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 3. 수확 후 관리 설비 4.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농산물 처리규정 등 사업계획서 <p>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갱신)신청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3조를 준용한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p> <p>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p> <p>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포장·저장·거래·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p> <p>6.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p> <p>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p> <p>8.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p>		<p>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p> <p>①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p> <p>[본조신설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3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p> <p>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이하 “품질인증</p>		<p>제3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p> <p>제28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로 한다.</p> <p>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p>1. 해당 수산물·수산특산물이 그 산지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p> <p>2. 해당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p> <p>3. 해당 수산물·수산특산물의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p> <p>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조사 및 그 시안(試案)의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관련 전문연구기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연구소</p> <p>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p>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①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심</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담당자와 신청인의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생산자집단이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산자집단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⑥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7과 같다.</p> <p>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 :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품명 :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3. 생산자 또는 생산자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및 전화번호</p> <p>4.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p> <p>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수산특산물) 품</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p>		<p>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3.24]</p> <p>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12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만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연장절차와 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장신청 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p> <p>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p> <p>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p> <p>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대표자·정관 2. 품질인증기관의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 심사원 4. 품질인증 업무규정 <p>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p>		<p>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6. 제17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9.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p> <p>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절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p> <p>제20조(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p> <p>②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다.</p>		<p>제4절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p> <p>제40조(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기준 및 대상 품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식장의 수질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種苗)는 병이 없음이 증명될 것 3. 종묘 도입에서 출하 시까지 양식 과정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양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친환경수산가공품은 친환경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친환경적 방법으로 가공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1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 등) ① 제 20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절차·표시 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중에서 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41조(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양식장 주변도(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가공공장 주변도(수산가공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식장 수질검사성적서(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검사한 성적서를 첨부한다) 4. 생산(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가공을 말한다),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2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일정과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명 이상의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2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①</p>		<p>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⑤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p> <p>제4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는 별표 11과 같다.</p> <p>제44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2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22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3.3.24]</p> <p>제4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 2.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생산계획서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품목 또는 그 생산계획량에 변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제40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제21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이력추적관리</p> <p>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이력추적관리</p> <p>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p>	<p>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항목은 인증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연장절차와 연장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이력추적관리</p> <p>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로 한다.</p> <p>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농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수산물 및 제2</p>		<p>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산자(단순가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p> <p>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재배면적(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양식면적(양식수산물만 해당한다) 라. 생산계획량 마. 재배지의 주소(농산물만 해당한다), 양식장 위치(양식수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산지 위판장 등의 주소(어획물만 해당한다)</p> <p>2. 유통자</p> <p>가.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수산물만 해당한다) 다. 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농산물만 해당한다) 및 그 각각의 주소</p> <p>3. 판매자</p> <p>가.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판매업체명 및 그 주소</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항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p> <p>⑥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p>②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등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⑧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게 알려 주어야 한다.</p> <p>⑨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p> <p>⑩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p> <p>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12(농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3(수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표시대상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p>		<p>3. 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른 표시항목 또는 별표 13 제5호에 따른 표시 내용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4.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2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 또는 별표 13 제1호에 따른 표지도표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풋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p>③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p>		<p>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류 : 5년 이내 약용작물류 : 6년 이내 양식수산물 : 5년 이내 <p>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와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신청, 심사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등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해양수산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p> <p>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 25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해당 품목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입고·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p>		<p>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입고·출고 정보 등 농수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p> <p>②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거나 등록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사후관리 등</p> <p>제28조(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사후관리 등</p> <p>제55조(승계의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p>1.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p> <p>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p> <p>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p> <p>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품질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p> <p>2.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제2호, 제119조 제1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9조제7항 각 호, 제23조제6항 각 호 또는 제37조제4항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제21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p> <p>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시료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시료</p>	<p>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16조,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 13조제4항을 준용한다.</p> <p>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 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전업·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처분 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2항의 경우(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리적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등록</p> <p>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리적표시</p> <p>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리적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등록</p> <p>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① 법</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p>	<p>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2.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p>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공고·열람 및</p>	<p>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3.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7. 자체품질기준 8. 품질관리계획서 <p>②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p>	<p>이의신청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p>서에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자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 자체품질기준 중 제품생산기준, 원료생산기준 또는 가공기준 <p>③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p> <p>2.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p>	<p>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계획서</p> <p>6.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 서류의 열람 장소</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 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p>1.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아니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 아닌 경우</p>	<p>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1. 등록일 및 등록번호</p> <p>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p> <p>3.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p> <p>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p> <p>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p> <p>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p> <p>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p> <p>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p>	<p>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p> <p>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p> <p>4. 해당 품목의 명칭·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p> <p>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	<p>명칭</p> <p>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p> <p>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p> <p>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계획서</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1. 취소일 및 등록번호</p> <p>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p> <p>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p> <p>4. 취소사유</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에 관한 세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원부(原簿)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에 대한 사항을 등록·보관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보관 및 생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34조(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p> <p>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p>		<p>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p> <p>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15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p>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p>		<p>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풋말로 표시할 수 있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p>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① 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한다)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p> <p>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p> <p>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p> <p>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p>	<p>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41조(「특허법」의 준용) ① 지리적표시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p>	<p>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46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6조 및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고,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0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46조제3호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제8호 및 제9호”로 본다.</p> <p>③ 제1항의 경우 “특허”는 “지리적표시”로,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특허청”·“특허청장” 및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특허심판원”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로, “심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판관”은 “심판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p> <p>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2.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거절 또는 제40조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3.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①</p> <p>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3급·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②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p> <p>⑤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p>	<p>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 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p> <p>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p> <p>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p> <p>⑥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6조(심판청구 방식) ①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지리적표시 명칭 4. 지리적표시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p>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p> <p>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p>제61조(심판청구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서 부분(副本)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62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사건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답변서 부분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등록신청 날짜 4. 등록거절 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補正)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p> <p>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p>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당사자·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p>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부분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p> <p>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p> <p>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p> <p>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p> <p>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p>		<p>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서 부분 2.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50조(「특허법」의 준용) ①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제1항제2호가목은 이 법에서 준용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p>		<p>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9조(심리 재개신청)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부분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70조(심판 비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p> <p>③ 제1항의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변리사”는 “대리인”으로 본다.</p> <p>제3절 재심 및 소송</p> <p>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p>		<p>제3절 재심 및 소송</p> <p>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5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p> <p>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p> <p>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 		<p>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서 부분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p> <p>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p> <p>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p> <p>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p> <p>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특허법」 제187조·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제1항”으로 본다.</p> <p>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p> <p>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p>	<p>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p> <p>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p>	<p>제4장 삭제 <2013.3.24></p> <p>제72조 삭제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p>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 	<p>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p>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수거·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p> <p>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p>사는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위반물량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경우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7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농산물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수산물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p> <p>3.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p> <p>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p> <p>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p> <p>2. 영업의 종류</p> <p>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p> <p>4. 농수산물의 명칭</p> <p>5. 위반내용</p> <p>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p> <p>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p>	<p>2. 영업의 종류</p> <p>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p> <p>4. 농수산물의 명칭</p> <p>5. 위반내용</p> <p>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5장 위험평가</p>	<p>제5장 삭제 <2013.3.24></p> <p>제73조 삭제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삭제 <2013.3.23></p> <p>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p>		<p>제74조 삭제 <2013.3.24></p> <p>제75조 삭제 <2013.3.24></p> <p>제76조 삭제 <2013.3.24></p> <p>제77조 삭제 <2013.3.24></p> <p>제78조 삭제 <2013.3.24></p> <p>제79조 삭제 <2013.3.24></p> <p>제80조 삭제 <2013.3.24></p> <p>제81조 삭제 <2013.3.24></p> <p>제82조 삭제 <2013.3.24></p> <p>제83조 삭제 <2013.3.24></p> <p>제84조 삭제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농산물</p> <p>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p> <p>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p> <p>2. 수산물</p> <p>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p> <p>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p>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제3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삭제 <2013.3.23>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p> <p>제69조(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 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p> <p>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p>		<p>있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와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 (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에 대하여 조사·점검을 한 결과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요청한 해역이 지정해역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2.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 및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의 의견서 3.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p>③ 시·도지사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과 폐기물처리 시설·분뇨시설·축산폐수·농업폐수·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잠정지정해역: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 일반지정해역: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p>		<p>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p> <p>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정된 지정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생조사를 한 결과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제2항에 따라 보고·통지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장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 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74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해양</p>	<p>제24조(수산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사항 등)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수산</p>	<p>제88조(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p> <p>③ 생산·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물의 생산·가공시설과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p> <p>2. 생산·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p> <p>3. 생산·가공품의 종류</p>	<p>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 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시설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 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한다)</p> <p>7.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한다)</p> <p>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공정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4.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은 제외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p> <p>1. 생산·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패류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해역에 있어야 한다.</p> <p>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법 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p> <p>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조사·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公海) 등에 위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⑤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조사·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영 제4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생산·원료입하·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2. 제93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중지·개선·보수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6조(조사·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p> <p>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조사</p>	<p>제25조(조사·점검의 주기)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맞추거나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p> <p>제26조(공동 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p>	<p>제90조(조사·점검)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② 조사·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 조사·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p> <p>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검사관이 조사·점검하게 할 것.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 등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2. 시·도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조사·점검하게 할 것</p> <p>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영 제26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점검 신</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른 열람·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열람·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p> <p>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점</p>	<p>등록한 자(이하 “생산·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점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6항에 따른 공동 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① 법 제77조에 따라 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그 밖에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강우량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정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제한의 절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시·도지사는 지정해역이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 	<p><개정 2013.3.23></p> <p>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9조(중지·개선·보수명령 등) ① 법 제 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이하 “중지·개선·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지·개선·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93조(생산·가공의 중지·개선·보수명령 등) ① 조사·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이하 “중지·개선·보수명령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개선·보수명령등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p> <p>②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발급받은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p> <p>4. 제76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5.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p> <p>6.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이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p> <p>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p> <p>제1절 농산물의 검사</p> <p>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p>	<p>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p> <p>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p>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p>	<p>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p> <p>제1절 농산물의 검사</p> <p>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농</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 (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p> <p>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p> <p>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p> <p>4.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p> <p>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p>	<p>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는 누에씨 및 누에고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이하 제96조, 제101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07조에서 같다)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제2항에 따라 포장 겉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p>		<p>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p> <p>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 및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감독)</p> <p>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검사 업무의 수행</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p>		<p>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농산물검사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3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p>②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은 곡류, 특작(特</p>	<p>제3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또는 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관 자격 중 종자류에 대한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p>	<p>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眞僞型)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자격 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④ 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作)·서류(薯類), 과실·채소류, 종자류, 잠사류(蠶絲類)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p> <p>③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p> <p>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 두어야 한다.</p> <p>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농산물검사관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p>		<p>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p> <p>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용기 등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85조(재검사 등) ①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 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제84조를 준용하여 해당</p>		<p>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검사결과의 표시를 교체하거나 검사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p> <p>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거나 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p>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86조 제1호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3과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p> <p>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p> <p>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에서 구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p>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이 없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p>	<p>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 	<p>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p> <p>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건제품·냉동품·염장품 등의 제품별·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官能檢査)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89조제1항</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013.3.23></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p>		<p>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2. 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일지 3.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p>②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5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검사장소·검사희망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은 검사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검사희망일을 연기하여 그 지연된 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산입(算</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p> <p>4.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검사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入)하지 아니한다.</p> <p>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p>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p> <p>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가공일지</p> <p>가. 품명</p> <p>나. 생산(가공)기간</p> <p>다. 생산량 및 재고량</p> <p>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p> <p>2.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선장의 확인서</p> <p>가. 어선명</p> <p>나. 어획기간</p> <p>다. 어장 위치</p> <p>라. 어획물의 생산·가공 및 보관 방법</p> <p>3.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용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가공 일지</p> <p>가. 품명</p> <p>나. 생산(가공)기간</p> <p>다. 생산량 및 재고량</p> <p>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p> <p>마. 자체 품질관리 내용</p>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2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p>		<p>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p> <p>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p> <p>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116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9조에 따른 수산물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p>	<p>제32조의2(국가검역·검사기관) 법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 및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에</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제88조에 따른 수산물검사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p>	<p>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 	<p>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국가검역·검사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국가검역·검사기관에서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p> <p>2.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②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p> <p>③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p>	<p>사·수산제조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산가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미생물학·생명공학·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p> <p>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p>1.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p> <p>2. 자체교육</p> <p>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p>	<p>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식품위생학·분석이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鮮度) 판정방법·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p> <p>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수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p>	<p>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수산물검사관은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96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구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p>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p>		<p>제123조(검사결과 표시)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96조(재검사) ①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p>		<p>제67호서식의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이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검사증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p>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수산물검사관이 아닌 다른 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물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수산물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p> <p>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p>		<p>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검사증명서에 별표 29에 따른 수산물 검사필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검정</p> <p>제98조(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검정</p> <p>제125조(검정절차 등)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신청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p> <p>제127조(검정항목)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항목은 별표 30과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00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p>		<p>제128조(검정방법)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31과 같다.</p> <p>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3.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려는 자는 품위·일반성분 분야 또는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4></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⑥ 법 제99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실험실 소재지 3. 검정 업무의 범위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5.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시설·장비 <p>⑦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p> <p>⑨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99조제2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9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2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조사·점검 등</p> <p>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용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p> <p>제102조(확인·조사·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조사·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p>	<p>제35조(확인·조사·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103조(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2. 농수산물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p> <p>3. 삭제 <2013.3.24></p> <p>4. 삭제 <2013.3.24></p> <p>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p> <p>6. 고객관리 업무</p> <p>7.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p> <p>8. 사용자 교육</p> <p>9. 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p> <p>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4></p> <p>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2.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p>		<p>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p> <p>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2.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p>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p> <p>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p>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 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p> <p>③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p>	<p>제36조(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p>	<p>기술 지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 3.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p>제37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p>제135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시험 : 2만원 2. 제2차시험 : 3만3천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p> <p>제38조(응시자격, 시험 과목·방법 및 합격 기준) ①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p>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p>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p> <p>④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 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p> <p>제39조(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40조(자격증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p>	<p>제136조(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 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 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 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 	<p>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137조(자금지원) 법 제110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p> <p>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110조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p> <p>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p> <p>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p> <p>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p> <p>제111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거나 거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p> <p>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p> <p>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p> <p>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仲都賣人),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產地流通人)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p> <p>3. 농수산물을 계약재배 또는 양식하거나 수집하여 포장·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p> <p>4.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p>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제139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p>② 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신청하는 자</p> <p>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p> <p>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p> <p>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p> <p>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p> <p>6.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신청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p> <p>7.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p> <p>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p>		<p>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p> <p>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유효기간연장·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p> <p>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등록 거절·취소에 대한 심판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자</p> <p>9.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1조에 따른 제척·기피신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른 참가신청,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비용액결정의 청구,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를 하는 자.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4조에 따른 재심에서의 신청·청구 등을 포함한다.</p> <p>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p> <p>11.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p> <p>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p> <p>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p> <p>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96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p> <p>15.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p> <p>16.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p> <p>17.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p> <p>제114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3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취소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품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이력 추적관리농수산물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p> <p>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p> <p>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p> <p>10.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p> <p>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p> <p>12. 제87조에 따른 검사관정의 취소</p> <p>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p> <p>14. 제97조에 따른 검사관정의 취소</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p> <p>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은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p>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4.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록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 또는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p>	<p>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임산물의 표준 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p> <p>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p> <p>8. 법 제33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p> <p>9. 삭제 <2013.3.23></p> <p>10. 삭제 <2013.3.23></p> <p>11. 삭제 <2013.3.23></p> <p>12. 삭제 <2013.3.23></p> <p>13. 삭제 <2013.3.23></p> <p>14. 삭제 <2013.3.23></p> <p>15. 삭제 <2013.3.23></p> <p>1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법 제8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누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p> <p>17.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8.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p> <p>19.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p> <p>20. 법 제99조제1항 및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p> <p>21. 법 제102조 따른 확인·조사·점검 등(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p> <p>22.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p> <p>23. 법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p> <p>24.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p> <p>25.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징수</p> <p>2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위</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p> <p>27. 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 대장 기록</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4.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5.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조사·점검 등 6.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7.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8.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3.3.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삭제 <2013.3.23></p> <p>3.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p> <p>4.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p>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영</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p> <p>3.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p> <p>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p> <p>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인증, 인증 취소</p> <p>6.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처분</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7.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p> <p>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p> <p>9.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p> <p>10. 삭제 <2013.3.23></p> <p>11. 삭제 <2013.3.23></p> <p>12. 삭제 <2013.3.23></p> <p>13. 삭제 <2013.3.23></p> <p>14. 삭제 <2013.3.23></p> <p>15. 삭제 <2013.3.23></p> <p>16. 삭제 <2013.3.23></p> <p>17.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p> <p>18.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p> <p>1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p> <p>20.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점검 중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1.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처분</p> <p>22. 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 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 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 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 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 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 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32. 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조사·점검 등 34.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산물의 생산제한</p> <p>5.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p> <p>6.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p> <p>7.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p> <p>8.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p> <p>9.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p>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조사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직원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p>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직원</p> <p>4. 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p> <p>5. 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직원</p> <p>6.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직원</p> <p>7. 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임원·직원</p> <p>8. 제99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원·직원</p> <p>9.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제57조제1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p> <p>2. 제57조제2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p> <p>3. 제57조제3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p> <p>제118조(벌칙)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p> <p>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p> <p>나.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p> <p>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라. 제21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마.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p> <p>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p> <p>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p> <p>5.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p> <p>6. 제10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p> <p>7.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p> <p>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8.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9.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p> <p>1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p> <p>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중</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2항(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p>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p> <p>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 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p> <p>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가공업 자등</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3.3.23></p> <p>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부 칙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 칙 <제6호, 2013.3.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p> <p>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㉞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제6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후단,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본문, 제41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3항 및 제110조제8호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1항제12호,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63조제1항제3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8조제4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제4호,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물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p> <p>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제15조제5호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농림축산</p>	<p>시행 당시 농림수산물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물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물·수산물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수산물·수산물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4조제1항·제2항 및 제1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 	<p>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p> <p>제1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p> <p>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p> <p>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p> <p>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p> <p>제26조, 제27조제1항제3호, 제28조 및 제33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제4조제7호, 제103조제3항 및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 제107조제1항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p>	<p>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p> <p>제30조제1항제4호·제5호,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2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2조의2(국가검역·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p> <p>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p> <p>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으로 한다.</p> <p>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34조제3항 단서, 제79조제3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2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6조제1호 및 제106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7항, 제8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9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p>	<p>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다음의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p> <p>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제42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9조,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3호, 제94조, 제95조제1항·제2항,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2조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예감사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p> <p>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물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p> <p>제58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5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p> <p>제60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72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p> <p>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으로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p>	<p>⑰부터 ⑳까지 생략</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114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p> <p>제9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가검역·검사기관”으로 한다.</p> <p>제103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p> <p>제12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p> <p>㉔부터 ㉙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203
[별표 2] 중지·개선·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	205
[별표 3]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207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07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인증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소·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표준규격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표시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행정처분대상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다.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전업·폐업 등으로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판매금지 3개월	판매금지 6개월	판매금지 12개월

라. 품질인증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4)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마.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월	
4) 법 제23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바. 지리적표시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2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0조 제3호	등록 취소		
2)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호	등록 취소		
3) 법 제32조제9항의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 제1호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4)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40조 제2호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5)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0조 제2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별표 2]

중지·개선·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개선·보수 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처분 전에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 마.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점검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제2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위생관리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8조 제3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또는 생산·가공 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	등록취소	
2)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 명령 또는 생산·가공 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나.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1)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2)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시정명령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경우	법 제78조 제5호			
1) 시정이 가능한 위해물이 발견된 경우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 명령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2) 시정이 불가능한 위해물이 발견된 경우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라.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8조 제1호	등록취소		
마.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8조 제4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등록취소	
바. 법 제78조에 따른 중지·개선·보수명령등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78조 제6호	등록취소		

[별표 3]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제30조제2항 관련)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
 - 가. 곡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 다.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 라.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 마. 잡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 가. 곡류
 - 1) 조곡(粗穀) : 콩·팥·녹두
 - 2) 정곡(精穀) : 현미·쌀
 -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 다.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곡류 : 현미·쌀·보리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6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7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아. 법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경우	법 제123조제2항제1호	7만원	15만원	30만원
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생산업자·가공업자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23조제2항제2호	7만원	15만원	30만원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영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해당 영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	213
[별표 2]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14
[별표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15
[별표 4]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16
[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218
[별표 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24
[별표 7]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	225
[별표 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26
[별표 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227
[별표 10] 친환경수산물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228
[별표 11]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229
[별표 1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	231
[별표 13]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232
[별표 1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	233
[별표 15]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234
[별표 16] 삭제	235
[별표 17] 삭제	235

[별표 18] 삭제	235
[별표 19]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36
[별표 20]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38
[별표 21]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	239
[별표 22] 농산물 검사표시인	240
[별표 23]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242
[별표 2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242
[별표 25]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44
[별표 26]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45
[별표 27]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246
[별표 28]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	247
[별표 29] 수산물 검사필증인	250
[별표 30] 검정항목	251
[별표 31]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252
[별표 3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256
[별표 33] 농산물 관련 수수료	259
[별표 34] 수산물 관련 수수료	262

[별표 1] <개정 2013.3.24>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도형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 1) 표지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지도형 내부의 “GAP” 및 “(우수관리인증)”의 글자 색상은 표

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바.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지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지



인증기관명(또는 우수관리시설명) :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 Certificate Number:

나. 표시항목: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등급,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 나.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라.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다.
-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바. 제3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 가. 표지 : 표지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 나.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등 원산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는다.
- 다.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
- 라.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마.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사용하되, 다른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 바. 생산연도(쌀만 해당한다)
- 사. 우수관리시설명(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업장 소재지
- 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생산자나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 자.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별표 2]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라. 생산자집단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 구성원이 소속된 생산자집단에 대해서도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구성원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다.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	-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바.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인증취소	-	-

[별표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인증심사원은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험에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라)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 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 마)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설

-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시설은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다.
- 나.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분석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분석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인증농가 이력관리 방법
- 나.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다. 인증의 사후관리
- 라.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마.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 바. 인증심사원 교육
- 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 아.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별표 4] <개정 2013.3.24>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마.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	-
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4호	-	-	-
1) 조직·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조직·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이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우수관리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	-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	-	-
1) 조직·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2) 조직·인력 및 시설 중 어느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7호	-	-	-
1)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별표 3 제3호다목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4)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
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차. 그 밖의 사유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0호	지정 취소		

[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인력

-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갖추어
-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과 자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법령, 농산물우수관리시설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

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라)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 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 마)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 다만,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보유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시설

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기준		비고
시설물	곡물의 수확 후 처리시설 및 완제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건조저장시설	가) 건조 및 저장시설은 잔곡(殘穀)이 발생하지 않거나, 잔곡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저장시설에는 통풍, 냉각 등 곡온(穀溫)을 낮출 수 있는 장치 및 곡온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곡온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저장시설은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저장시설 내에는 농약 등 곡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곡물과 같이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기준		비고
가공실	가) 원료 곡물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가공실은 반입, 건조 및 저장 시설은 물론 부산물실과 격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쌀 가공실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완제품 보관부, 포장재 보관부가 각각 격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가공실의 바닥은 하중과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라) 가공실의 내벽과 천장은 곡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게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가공실의 출입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해야 하며, 지게차 출입이 잦은 출입문은 이중문으로서 외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해야 하고, 내문은 신속하게 여닫을 수 있고 분진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바) 가공실 창문은 밀폐가 가능해야 하며,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가공실에는 집진(集塵)을 위한 외부 공기 도입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공기 도입구에는 먼지,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 가공실의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가공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수 집되어야 하며, 구획된 목적과 다르게 가공실 내에 부산물, 완제품 및 포장재 등이 방치·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차) 가공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흡입식 청소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시설기준		비고
가공시설	가) 이송시설,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시설에서 도정된 곡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강(鋼) 등과 같이 매끄럽고 내부식성(耐腐蝕性)이어야 하며, 구멍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가공시설은 쥐 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입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각 단위기계, 이송시설 및 저장용기는 잔곡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 곡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및 다른 곡물의 난알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한 선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집진시설 및 부산물실	가) 분진 발생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시설 등은 가공실과 구획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분말 등의 제거를 위한 집진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며, 집진시설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왕겨실·미강실 및 그 밖의 부산물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수처리시설	가) 곡물의 세척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수)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나) 곡물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용수저장용기는 밀폐가 되는 덮개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시설기준		비고
위생관리	가) 화장실은 가공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 건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공실 종사자를 위한 위생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청소 설비 및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시설	가) 먼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가공실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관리유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시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건축물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 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저장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의 자동화 또는 농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가)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X		
(3) 내벽은 내수성(耐水性)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X		
(4)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H빔·배관 등에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고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으며,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6)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악취·유해가스, 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창문은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라)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작업장 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X		
수확 후 관리 설비	가)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갖추어 관리되어야 한다.			
	나)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척 및 소독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X		
	다) 냉각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라)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수처리 시설	가)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수)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X		
	나)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X		
	다)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X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저장(예냉) 시설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原物) 및 농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벽체 및 천장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패널로 마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팻트 등을 갖추어 적절한 온도관리가 되어야 한다.			
수송·운반 설비	라)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感溫棒)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운송차량은 운송 중인 농산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냉장유통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장탑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생 관리	나)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하기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X		
	다)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X		
	가)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 건조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위생 관리	나)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다)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그 밖의 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나) 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X		
관리 유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작업공정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 작업장, 기계설비, 저장시설, 화장실의 점검기준 및 관리일지 등			

3)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자가보유시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건축물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농산물의 선별, 수확 후 관리, 저장 등을 위한 작업실을 말한다.			
	가) 작업장의 바닥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X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3)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하지 않도록 청결하여야 한다.			
	(4) 문은 견고한 재질로서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5)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수확 후 관리 시설	가)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을 갖추어 관리되어야 한다.			
	나)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수처리 시설	가)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수)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X		
	나)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X		
	다)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X		
저장 시설	저장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보관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가)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수송 · 운반 설비	가)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하기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X		
	나)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X		
위생 관 리	가) 화장실 구비 시 손 세척시설과 손 건조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다)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 밖의 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나) 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X		
관리 유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관리기록대장 등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확 후 관리 품목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취급 방법

다. 수확 후 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

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마.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라.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 전부를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인증능가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 가공·포장·저장·거래·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6호	지정 취소	-	-
사.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8호	지정 취소	-	-

[별표 7] <개정 2013.3.24>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
(제32조제1항 관련)

1. 표지도형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Name of Certifying Body :
Certificate Number :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 1) 표지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지도형 내부의 "품질인증", "(QUALITY SEAFOOD)" 및 "QUALITY SEAFOOD"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바.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지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아. 표지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13.3.24>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인력

-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포함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
- 2) 심사원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 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수산 또는 식품가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다) 수산물·수산가공품 또는 식품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설

품질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을 위하여 시·도 단위로 10㎡ 이상의 검정실(檢定室)을 설치할 것. 다만,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검정실의 수(數)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비

검정실별로 다음 표의 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장비는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품질인증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 비 명	최소비치기준 (대·개)	조 건
○ 저울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1 이상	자체보유
○ 증류수 제조기	"	"
○ 분쇄기	"	"
○ 건조기(Dry Oven)	"	"
○ 데시케이터(Desiccator)	"	"
○ 가열기(Hot Plat)	"	"
○ 교반기(攪拌機)	"	"
○ 전개조	"	"
○ 회화로	"	"
○ 후드	"	"
○ 적외선 수분측정기	"	"
○ 이산화황 분석용 장비	"	자체보유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가능
○ 그 밖에 품질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장비		

4. 품질인증 업무규정

품질인증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 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방법
- 다. 품질인증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 마.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이상으로 감경하고,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이상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품질인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10] <개정 2013.3.24>

친환경수산물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42조제5항 관련)

1. 심사일반

-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양식장 운영에 관한 기록과 양식장의 여건 및 생산물 등이 제4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수질·잔류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

- 가. 인증심사원은 양식어장 또는 가공시설의 수질에 대한 검사는 인증신청인이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한 수질성적서로 대신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시 생산물(양식 중인 생산물을 포함한다)을 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유해잔류물질 검사용 시료(생산물)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수거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보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 마.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원, 국립수산물학원 및 그 소속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3. 인증심사의 일부 면제

-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심사 결과 보고

-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수산물인증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제3호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5. 심사 결과 판정

-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
- 나.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13.3.24>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제43조제2항 관련)

1. 표지도형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Name of Certifying Body :
Certificate Number :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 1) 표지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지도형 내부의 "친환경수산물", "(ECO SEAFOOD)" 및 "ECO SEAFOOD"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3. 표시사항

 <p>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p>	<p>친환경수산물표시품 : (등록 명칭) Eco-SF : (영문등록 명칭) 생산자 : 주 소 : (전화)</p>
<p>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 명칭을 보호받는 표시품입니다.</p>	

비고

1. Eco-SF는 Eco-friendly Seafood의 약자임
2. (예 1) 등록 명칭(넙치의 경우)
 - 친환경수산물표시품: 넙치
 - Eco-SF: Bastard
3. (예 2) 등록 명칭(마른김·조미김의 경우)
 - 친환경수산물가공식품표시품: 마른김(조미김)
 - Eco-SF: Dried Gim(Seasoned Gim)

4. 표시방법

- 가. 크기 : 가로 8cm×세로 8cm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같은 비율로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 나.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글자의 크기
 - 1) 등록 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cm(57pt.)×세로 2.5cm(71pt.)
 -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0cm(28pt.)×세로 1.5cm(43pt.)
 - 3) 그 밖의 문자 : 가로 0.8cm(23pt.)×세로 1.0cm(28pt.)

[별표 1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와 제도법




가. 표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나. 제도법

- 1) 도형표시
- 2)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 3) 표지도형의 색상 배색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가) 화살표는 연두색(Cyan 30 + Yellow 100)으로 한다.
-  나) 또 다른 화살표는 녹색(Cyan 70 + Yellow 100)으로 한다.
-  다) 원형은 청색(Cyan 100 + Magenta 80)으로 한다.

- 4)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표시사항

가. 표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나. 표시항목

- 1)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적음
- 2)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3)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4)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사용하되, 다른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 5) 생산연도 : 쌀만 해당한다.
- 6) 생산자 :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7)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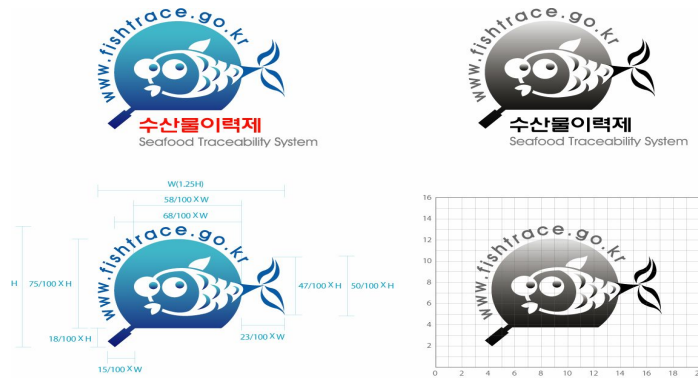
3. 표시방법

- 가. 표시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표시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 나. 표시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시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표시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시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라.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마. 제3호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3]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표시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 1) 표시도형의 세로(위쪽 끝과 아래쪽 끝)를 H로 했을 때 가로(왼쪽 끝과 오른쪽 끝) W는 1.25H이다.
- 2) 안쪽 원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68/100×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85/100×H 원형으로 원의 아래쪽 끝부분의 10/100×H를 수평으로 자르면 75/100×H가 된다.
- 3) 원형 속의 물고기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58/100×W로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50/100×H로 한다.

- 4) 원형 왼쪽 끝 도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15/100×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18/100×H로 한다.
- 5) 홈페이지주소는 원형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전체도형의 크기에 벗어나지 않게 한다.
- 6) 꼬리 부분은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23/100×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47/100×H로 한다.

나. 표시도형 하단부에는 수산물이력제 한글과 Seafood Traceability System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다.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한글 글자는 빨간색으로, 영문 글자는 회색으로, 전체도형은 파란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

306 U	1) 파란색 - PANTONE 306 U / C75 Y5 / R65 G183 B204
2747 U	2) PANTONE 2747 U / C100 M85 K15 / R14 G21 B115
	3) PANTONE 300 U / C100 M45 / R10 G88 B165
	4) 빨간색 - PANTONE 485 U / M95 Y100 / R255 G17
	5) 회 색 - PANTONE Gray 9 U / K50 / R127 G127 B127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시



나. 표시항목 :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나.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 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별표 1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 (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집단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경고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라.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6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별표 15] <개정 2013.3.2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

1.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 1) 표지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지도형 내부의 "지리적표시", "(PGI)" 및 "PGI"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또는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3. 표시사항

	등록 명칭 :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 : 주소(전화)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등록 명칭 :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 : 주소(전화)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4. 표시방법

-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 나.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라.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도표와 등록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 마. 글자의 크기(포장재 15kg 기준)
 - 1) 등록 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cm(57pt.) × 세로 2.5cm(71pt.)
 -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cm(28pt.) × 세로 1.5cm(43pt.)
 - 3) 그 밖의 문자 : 가로 0.8cm(23pt.) × 세로 1cm(28pt.)

[별표 16] 삭제 <2013.3.24>

[별표 17] 삭제 <2013.3.24>

[별표 18] 삭제 <2013.3.24>

[별표 19]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종류		검사인력 최소 확보기준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	조곡(粗穀)	포장물 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산물(産物)	검사 장소 1개소당 1명
	정곡(精穀)		검사 장소 2개소당 1명
	서류(薯類), 특용작물류(特作), 과실류, 채소류		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수입농산물	공통		항구지 1개소당 3명

2. 시설

검사건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 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이상의 감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종류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관당
공통	○ 저울	1 1 1	1조 1
	- 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산물은 제외)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kg 이상(산물은 제외)		
	○ 시료균분기(과실·채소류는 제외)	1	
	○ 용적 중 측정기(산물은 제외)	1	
○ Micro Meter(곡류는 제외)	1		
○ 해당 품목 검사증인(산물은 제외)			
○ 휴대용 수분측정기			

나. 종류별 검사장비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관당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 검사	조곡 (포장물)	○ 동력제현기	1	각 1조 각 1조 각 1조 각 1조 각 2개 각 1조 1
			○ 기준분동	1	
			○ 감정접시(원형)	50	
			○ 해당 품목 검사체		
			- 출체 1.6mm(벼 해당)	각 1조	
			- 세로눈관체 2.0mm, 2.2mm, 2.4mm, 2.5mm (보리 해당)	각 1조	
			- 표준그물체 1.4mm, 1.7mm (정곡 해당)	각 1조	
			- 등근눈체 4.00mm, 6.30mm, 7.10mm(콩 해당)		
			○ 색대(조곡용 ∅16mm, 정곡용 ∅13mm)	각 1조	
			○ 인습기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관당	
		조곡 (산물)	○ 자동계량기(중량, 수분 동시 측정용) ○ 시료건조기(건조함수 30칸 이상) ○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 측정기. 다만, 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 측 정이 가능한 고주파 수분 측정기로 대체 가능 ○ 동력제현기 ○ 감정접시(원형) ○ 줄체 1.6mm(벼 해당) ○ 세로눈판체 2.0mm, 2.2mm, 2.4mm, 2.5mm (보리, 밀 해당) ○ 표준그물체(1.4mm, 1.7mm) ○ 색대(조곡용 \varnothing 16mm, 정곡용 \varnothing 13mm) ○ 인습기 ○ 관수동 저울(첫달림 50g 이하, 끝달림 100kg 이상)	1 1 1 1 50 각 1조 각 1조 1 1		
		정곡	○ 도정도 감정기구(5칸 이상) ○ 표준그물체(1.4mm, 1.7mm) ○ 색대(조곡용 \varnothing 16mm, 정곡용 \varnothing 13mm) ○ 인습기 ○ 감정접시(원형)	1 각 1조 50	각 1개 1	각 2개 1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관당		
			○ 향온건조기(105℃) ○ 시료분쇄기(믹서기) ○ 그물체(0.84mm) ○ 검사봉 ○ 색대(\varnothing 13mm)	1 1 1		1 2	
			○ 향온건조기(105℃) ○ pH 미터 ○ 당도계 ○ 지름관	1 1		1 1	
		수입농산물	곡류 검사	○ 정미·정맥기 ○ 발아시험기 ○ 미립투시기 ○ 입체현미경 ○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 측정기. 다만, 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 측 정이 가능한 고주파 수분 측정기로 대체 가능 ○ 이중관색대 ○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 ○ 색대(\varnothing 13mm)	1 1 1 1 1		1 1 2
				○ 입체현미경 ○ 그물체(0.84mm) ○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 측정기. 다만, 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 측	1 1 1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관당
			정이 가능한 고주파 수분 측정기로 대체 가능 ○ 유분 및 산가분석기 ○ 색대	1	2

4. 검사업무 규정

검사업무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검사관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 검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20]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1) 시설·장비·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시설·장비·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1) 검사품의 제조제가 필요한 경우 2) 검사품의 제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 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 취소

[별표 21]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자격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	-
1) 검사나 재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자격취소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3)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4) 자격정지 중에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5)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6) 1등급 착오 20% 이상, 2등급 착오 5% 이상에 해당되는 위격검사를 한 경우		6개월 정지	자격취소	
7) 1등급 착오 10% 이상 20% 미만, 2등급 착오 3% 이상 5% 미만에 해당되는 위격검사를 한 경우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자격취소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	-

[별표 2]

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

종류	도안	구분	치수(mm)	
			1호	2호
특등	특	세로	35	18
		가로	20	10
		중간가로	24	12
		획 폭	3	1.5
1등		테두리 지름	40	20
		테두리 폭	4	2
		점 지름	12	6
2등		테두리 세로	40	20
		테두리 중간	23	12
		테두리 폭	4	2
		점 지름	8	4
3등		테두리 각 원 지름	20	10
		테두리 폭	4	2
		점 지름	6	3
등외		각 변의 길이	33	12
		각 변의 폭	4	2
합격		각 변	33	12
		바깥 원 지름	18	9
		획 폭	4	2

종류	도안		구분	치수(mm)	
				1호	2호
불합격			세로 가로 획 폭	30 25 4	15 13 2
검사			세로 가로 획 폭	30 25 4	15 13 2
재검사			세로 가로 획 폭	30 25 4	15 13 2
말소			각 변 획 폭	40 4	20 2
종자			세로 가로 획 폭	30 25 4	15 13 2
특별기호		※ 원 안에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특별표기를 삽입한다.	원 지름 원 획 폭 자 획 폭	40 3 3	20 1.5 1.5
검사 일부인 (국내용)		※ 원 안 위쪽에는 검사기관명을 삽입한다. ※ 두 줄 중앙에는 검사일을 삽입한다. ※ 원 안 아래쪽에는 검사관번호를 삽입한다.	바깥 원 지름 안의 원 지름 검사일란의 폭	28 16 8	14 8 4

종류	도안		구분	치수(mm)	
				1호	2호
검사 일부인 (수출용)		※ 위쪽에 검사기관명(영문)을 삽입한다. ※ 아래쪽에 해당 국가명(영문)을 삽입한다.	세로 지름 가로 지름	35 50	18 25

[별표 23] <개정 2013.3.24>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

종류	품 목	검사시행시기	유효기간 (일)
곡류	벼·콩	5.1. ~ 9.30.	90
		10.1. ~ 4.30.	120
	겉보리·쌀보리·팥·녹두· 현미··보리쌀	5.1. ~ 9.30.	60
		10.1. ~ 4.30.	90
	쌀	5.1. ~ 9.30.	40
		10.1. ~ 4.30.	60
특용작물류	참깨·땅콩	1.1. ~ 12.31.	90
과실류	사과·배	5.1. ~ 9.30.	15
		10.1. ~ 4.30.	30
	단감	1.1. ~ 12.31.	20
	감귤	1.1. ~ 12.31.	30
채소류	고추·마늘·양파	1.1. ~ 12.31.	30
잠사류(蠶絲類)	누에씨	1.1. ~ 12.31.	365
	누에고치	1.1. ~ 12.31.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농산물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검사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4] <개정 2013.3.2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8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검사신청 서류의 완비 여부 확인
- 2)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확인(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 3) 생산·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지 여부 등
- 4)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등록시설만 해당한다)
-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여부의 확인(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 6)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 여부

2. 관능검사

가. "관능검사"란 오관(五官)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외국요구 기준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포장재·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수산가공품
- 2)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비식용 수산·수산가공품은 제외한다)
- 3)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4)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나.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에는 다음의 표본추출방법으로 한다.

- 1) 무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

신청 로트(Lot)의 크기		관능검사 채점 지점(마리)
	1톤 미만	2
1톤 이상	3톤 미만	3
3톤 이상	5톤 미만	4
5톤 이상	10톤 미만	5
10톤 이상	20톤 미만	6
20톤 이상		7

2) 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한 블록형의 무포장 제품을 포함한다)

신청 개수	추출 개수	채점 개수
4개 이하	1	1
5개 이상 50개 이하	3	1
51개 이상 100개 이하	5	2
101개 이상 200개 이하	7	2
201개 이상 300개 이하	9	3
301개 이상 400개 이하	11	3
401개 이상 500개 이하	13	4
501개 이상 700개 이하	15	5
701개 이상 1,000개 이하	17	5
1,001개 이상	20	6

3.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란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검사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2)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3) 외국요구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요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검사방법으로 한다.

비고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 또는 수출용으로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이 수거한 검사시료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은 수거한 검사시료와 수출하는 수산물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별표 25] <개정 2013.3.2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 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검사업무 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26]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3호			
1) 시설·장비·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2) 시설·장비·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4호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 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 취소

[별표 27]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자격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3)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4) 위격검사가 "경고통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5) 위격검사가 "주의통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	-




[별표 28] <개정 2013.3.2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
(제123조제1항 관련)




1. 검사 표시(수출용)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봉인	제1호인		바깥 원의 지름 : 40mm 바깥 원 간격 : 8mm 안의 원 글자의 굵기 : 0.5mm (바깥 원 : 1.5mm) SEAL : 1mm SEAL란의 간격 : 10mm	○ 포장 봉인용
합격증인 및 등급증인	제2호인		바깥 원 : 30mm 지름 안의 원 : 18mm 등급 : 1mm 글자의 굵기 바깥 원 : 1mm	○ 포장용 (특등, Special Grade)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제3호인		바깥 원 : 30mm 지름 안의 원 : 18mm 등급 : 1mm 글자의 굵기 바깥 원 : 1mm	○ 포장용 (1등)
	제4호인		바깥 원 : 30mm 지름 안의 원 : 18mm 등급 : 1mm 글자의 굵기 바깥 원 : 1mm	○ 포장용 (2등)
	제5호인		바깥 원 : 30mm 지름 안의 원 : 18mm 등급 : 1mm 글자의 굵기 바깥 원 : 1mm	○ 포장용 (3등)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소인	제6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 : 1mm 바깥 원 : 1mm 	○ 포장용 (등의, Off Grade)
	제7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 : 0.3mm 바깥 원 : 1mm 	○ 포장용 (합격)
	제8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 0.3mm (바깥 원 : 1mm) 안의 원 안에 있는 X자의 각도: 90°	○ 포장용 (소인)

2. 검사 표시(정부 비축용 및 국내 소비용)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등급증인	제1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 그 밖의 글자 : 0.6mm	○ 포장용 (특등)
	제2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 그 밖의 글자 : 0.6mm	○ 포장용 (1등)
	제3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 포장용 (2등)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제4호인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 그 밖의 글자 : 0.6mm	○ 포장용 (3등)
	제5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 그 밖의 글자 : 0.6mm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 그 밖의 글자 : 0.6mm	○ 포장용 (등외)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합격증인	제6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 그 밖의 글자 : 0.6mm	○ 포장용 (합격)
불합격증인	제7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 그 밖의 글자 : 0.6mm	○ 포장용 (불합격)
검인	제8호인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 포장용 (봉인 및 결속대 지용)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봉합지		 <p>INSPECTION SEAL Name of Inspection Agency</p>	<p>등급 : 1.5mm 가운데 글자 : 1.5mm 그 밖의 글자 : 1.0mm</p> <p>가로: 40mm 세로: 270mm</p>	○ 포장용 (봉합용)

[별표 29] <개정 2013.3.24>

수산물 검사필증인(제124조제6항 관련)

모형	규격	용도	비고
	<p>지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 원 : 40mm 안의 원 : 25mm <p>글자의 굵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의 원 : 1mm 바깥 원 : 1mm 	○ 수출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용	"○○"표시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약호를 삽입

[별표 30]

검정항목(제127조 관련)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구 분	검 정 항 목
가.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중종자, 용적중, 이물, 싸라기, 입도, 이중 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 비율, 색깔 비율, 결집과율, (조)회분, 사분 등
나. 발아율	○ 발아율, 발아세(맥주보리만 해당한다) 등
다. 도정률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도정률 등 ○ 맥류의 정백률 등
라. 일반성분	○ 수분, 산가, 산도, 단백질, 지방, 조섬유, 당도 등
마.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질산염 등
바. 유해 중금속	○ 카드뮴, 납 등
사.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아.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자. 항생물질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차. 방사능	○ 세슘, 요오드

2. 농지, 용수, 자재

구 분	검 정 항 목
농 지 (토양)	○ 카드뮴·구리·납 ○ 비소 ○ 수은 ○ 6가크롬·아연·니켈
용 수 (하천수·호소수)	○ 크롬·아연·구리·카드뮴·납·망간·니켈·철 ○ 비소 ○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 6가크롬 ○ 수은
용 수 (먹는물·먹는샘물)	○ 구리·카드뮴·납·아연·알루미늄·망간·철 ○ 셀레늄 ○ 비소 ○ 수은 ○ 6가크롬
농자재(비료)	○ 질소, 인산, 칼륨 등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3. 수산물

구 분	검 정 항 목
일반성분 등	수분, 회분, 지방, 조섬유, 단백질, 염분, 산가, 전분, 토사, 휘발성 염기질소, 엑스분, 열탕불용해잔사물, 젤리강도(한천), 수소이온 농도(pH), 당도, 히스타민, 트리메틸아민, 아미노질소, 전질소, 비타민 A, 이산화황(SO ₂), 붕산, 일산화탄소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중금속	수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방사능	방사능
세균	대장균군, 생균수, 분변계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
독소	복어독소, 패류독소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별표 31] <개정 2013.3.24>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29조 관련)

1.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가. 품위·일반성분 검정(품위, 발아율, 도정률, 일반성분)

1) 검정실의 면적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분석실 등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2) 검정인력의 자격 및 인원 수

가) 검정인력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농학계열(농학, 원예학 등), 식품과학계열(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등)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농산물품질관리사, 종자기사, 농산물검사관, 생물공학기사 등의 농학, 식품과학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1) 또는 (2) 외의 사람은 농산물검사·검정 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정인력 수: 가)목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 이상. 이 중 품위검정 1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한 농산물검사관 자격(곡류, 특작·서류, 과일·채소류)을 갖추거나 농산물의 품위 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시험·검사·검정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성분 검정 1명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가)(2)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3년 이상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 시험·검사·검정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기준

- 가) 검정시설은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분석실 등의 실험실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장비는 품위·일반성분 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용도	장 비 명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울(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kg 이상) ○ 시료균분기, 감정접시 등
품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체(1.6mm), 세로눈판체(2.0mm, 2.2mm, 2.4mm, 2.5mm), 표준그물체(1.4mm, 1.7mm), 등근눈체(4.00mm, 6.30mm, 7.10mm), 그물체(0.84mm) ○ 항온건조기(105℃) 또는 적외선수분측정기 ○ 감정대, 용적중 측정기, Micro Meter, 지름판 ○ 시료분쇄기, 도정도 감정기구 ○ 동력제현기, 정미기, 쌀 품위분석기 ○ 회화로, 사분측정병 등
발아율	○ 발아시험기
도정수율	○ 동력제현기, 정미기, 정맥기 등
일반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분 및 산가분석기, 단백질분석기(겔달식 분석기) ○ 항온건조기(105℃) 또는 적외선수분측정기 ○ 당도계, pH미터, 산도측정기 ○ 회화로, 화학천칭(첫달림 0.0001g 이하 끝달림 210g 이상)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고 ○ 그 밖에 품위·일반성분 검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 나.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무기성분·유해중금속·잔류농약·곰팡이독소·항생물질과 농지 및 용수, 자재의 품위 성분·유해물질)

1) 검정실의 면적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 검정실 면적의 합계가 250㎡ 이상이어야 한다.

2) 검정인력의 자격 및 인원

가) 검정인력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3) (1) 또는 (2) 외의 사람으로써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정인력의 수: 가)목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4명 이상. 이 중 이화학 분야 1명과 미생물 분야 1명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가)(2)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4년 이상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검정시설은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검정업무 대상별로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아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

(가) 잔류농약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Homogenizer) 또는 믹서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PLC/MS)
 - 그 밖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나) 중금속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Microwave) 또는 가열판(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다) 곰팡이독소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HPLC/MS/MS)
- (라) 항생물질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HPLC/MS/MS)
- (마) 방사능
- 감마핵종분석기
- (바) 그 밖에 유해물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하는 분석기구의 기준

- (2) 농지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 그 밖에 농지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3) 용수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 무균작업대
 - 고압멸균기
 - 균질기 또는 스토마커
 - 배양기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광학현미경(배율 1천배 이상)
 - 이온크로마토그래프
 - 그 밖에 수질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4) 자재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 그 밖에 자재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2.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가. 조직 및 인력

- 1)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 2)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 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일반사항	검정실 면적, 검정인력 등이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가?	10	
	검정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검정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5	
	시약 및 장비 관리지침을 갖추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검정장비의 검정·교정 등)	5	
	검정실 안전수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용매 등 폐액(廢液)은 특성에 맞게 분리 처리되고 있는가?	5	
	검정기록 및 검정결과물의 정리 및 보관은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5	
검정과정	품위계측 및 분석방법 등을 공인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10	
	표준계측·분석지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갖추고 이에 따라 검정하고 있는가?	10	
	시료는 균질하고 대표성 있게 균분·수거하고 있는가?	5	
	시료의 전처리(유기용매의 추출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검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 등	품위계측 및 분석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10	
	시료의 전처리(유기용매의 추출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5	
	기기이용 및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5	
	분야별 용어의 개념 및 검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	5	
검정능력	시료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 결과	10	
합 계		100	

<작성요령>

-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긴다.
- 우수 : 100%, 양호: 80%, 보통: 60%, 미흡: 40%, 불량: 20%

나. 평가방법

- 1) 검정능력평가는 배점기준 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2) 검정능력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가) 평점평균 80점 이상: 적합. 다만,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라도 시료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가 60% 이하이거나, 검정능력 외의 항목별 배점기준 중 평가항목 1개 이상이 배점기준의 40% 이하 점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
 - 나) 평점평균 80점 미만: 부적합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정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정수수료 및 그 징수 방법

다. 검정 담당자의 준수사항 및 검정 담당자 자체 관리·감독 요령

라. 검정인력 자체 교육방법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3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정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검정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검정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검정하지 않고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정시료가 아닌 다른 검정시료의 검정 결과를 인용하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정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정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법 제10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9조제2항에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검정업무를 계속한 경우 1) 변경된 기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실험실 소재지, 검정업무의 범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4호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변경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및 검정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검정업무 정지 7일	검정업무 정지 15일
마. 검정기관 지정기준 1)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검사능력(숙련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3)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검정업무의 범위 및 방법 1) 지정받은 검정업무 범위를 벗어나 검정한 경우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정한 경우 3) 공시험(空試驗)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실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물질 등 적정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p>사. 검정 관련 기록관리</p> <p>1) 검정 결과 확인을 위한 검정 절차·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2) 시험·검정일·검사자 등 단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p> <p>3) 시료량, 시험·검정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 내용 등을 적지 않은 경우</p>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검정업무 정지 15일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p>아. 검정기간, 검정수수료 등</p> <p>1) 검정기관 변경사항 신고 및 검정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2) 검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3) 검정수수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4) 검정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검정업무 정지 7일	검정업무 정지 15일
<p>자. 검정성적서 발급</p> <p>1) 검정대상에 맞는 적절한 표준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p>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p>2) 시료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p> <p>3) 검정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정하고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p> <p>4) 의뢰받은 검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다른 검정항목을 적용하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p> <p>5) 경미한 실수로 검정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정 결과와 다르게 판정한 경우</p>				

[별표 33] <개정 2013.3.24>

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1.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수수료(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5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	2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며, 인증 신청서 접수 시 징수한다.

나.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 1)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 2) 일비·식비·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식비·숙박비를 징수한다.

다. 토양·수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갱신)	1	100,000
○ 우수관리시설의 온라인 지정신청(신규·갱신)	1	95,000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국내외)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신규·갱신)	1	200,000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온라인 지정신청(신규·갱신)	1	190,000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국외)

-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實費)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100,000
○ 지리적표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된 절차에 관한 승계신청	1	20,000
○ 지리적표시의 무효·취소심판 청구, 등록 거절·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재심청구	1	170,000
- 온라인 청구	1	150,000
○ 지리적표시 심판청구서의 보정	1	14,000
- 온라인 청구	1	4,000
○ 지리적표시 심판관의 제척·기피 신청	1	1,500
○ 지리적표시 심판 참가신청	1	당사자 : 150,000 보조참가 : 18,0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결정 청구	1	5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정본 청구	1	400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6. 삭제 <2013.3.24>

7.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8. 농산물 검사수수료

종류별	품 목	중량	단위	수수료(원)
곡류	○ 쌀	40kg	대	30
	○ 녹두	40kg	대	30
	○ 그 밖의 곡류 모든 품목	40kg	대	20
서류	○ 모든 품목	40kg	대	20
특용작물류	○ 참깨	40kg	대	40
	○ 그 밖의 특용작물 모든 품목	40kg	대	20
과실류	○ 모든 품목	15kg	상자	20
채소류	○ 고추	20kg	대	30
	○ 그 밖의 채소류 모든 품목	20kg	대	20
잡사류	○ 누에씨	시·도지사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 누에고치			
수입농산물류	○ 정곡(현미포함)	1톤	-	70
	○ 그 밖의 수입농산물류 모든 품목	1톤	-	6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 품목의 종류별 검사수수료를 우선 적용하며,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검사수수료 중 가장 낮게 설정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9. 농산물 검정수수료

구 분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가.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 비율, 색깔 비율, 결점 과율	1항목	8,600
		1점	13,700
		1점	17,200
	○ (조)회분		
	○ 사 분		

구 분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나. 발아율	○ 발아율, 발아세	1항목	30,800
다. 도정률	○ 미곡의 체현율, 현백률	1항목	9,100
	○ 맥류의 정백률	1항목	18,200
라. 일반성분	○ 수분	1점	12,000
	○ 단백질	1점	26,000
	○ 지방	1점	26,000
	○ 조섬유	1점	8,600
	○ 산가	1점	8,600
	○ 산도, 당도	1항목	8,600
마.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1성분	46,000
	○ 질산염, 아질산염	1성분	15,000
바. 유해중금속	○ 카드뮴, 납 등	1성분	40,000
사.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펜,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81,400
아.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1성분	87,000
자. 항생물질	○ 항생제	1성분	40,000
	○ 합성항균제	1성분	40,000
	○ 호르몬제	1성분	180,300
차. 방사능	○ 세슘, 요오드	1점	50,000

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10. 농지, 용수, 농자재 검정수수료

구 분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농지 (토양)	○ 카드뮴·구리·납	1점 1성분	10,600
	○ 비소		8,700
	○ 수은		18,300
	○ 6가크롬·아연·니켈		18,300
용수 (하천수·호소수)	○ 크롬·아연·구리·카드뮴·납·망간·니켈·철	1점 1성분	6,900
	○ 비소		13,900
	○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6,000
	○ 6가크롬		6,900
	○ 수은		10,600
용수 (먹는물·먹는샘물)	○ 구리·카드뮴·납·아연·알루미늄·망간·철	1점 1성분	6,100
	○ 셀레늄		6,600
	○ 비소		7,700
	○ 수은		6,600
	○ 6가크롬		3,900
농자재(비료)	○ 질소, 인산, 칼륨 등	1점 1성분	10,600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1점 1성분	11,80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4] <개정 2013.3.24>

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1	30,000

2.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신청	1	200,000

3. 친환경수산물인증 등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	1	30,000

4.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100,000
○ 지리적표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된 절차에 관한 승계신청	1	20,000
○ 지리적표시의 무효·취소심판 청구, 등록 거절·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재심청구 - 온라인 청구	1 1	170,000 150,000
○ 지리적표시 심판청구서의 보정 - 온라인 청구	1 1	14,000 4,000
○ 지리적표시 심판관의 제척·기피 신청	1	1,500
○ 지리적표시 심판 참가신청	1	당사자 : 150,000 보조참가 : 18,0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결정 청구	1	5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정본 청구	1	400

5. 수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6. 삭제 <2013.3.24>

7.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구 분	검정항목	단위	수수료(원)
가. 일반성분	수분, 회분	1항목	8,000
	지방, 조섭유	1항목	26,000
	단백질, 염분, 산가, 전분	1항목	6,000
	토사, 휘발성 염기질소	1항목	8,600
	엑스분, 열탕불용해잔사물	1항목	8,600
	젤리강도(한천), 수소이온농도(pH)	1항목	8,600
	당도, 히스타민, 트리메틸아민	1항목	8,600
	아미노질소, 전질소	1항목	26,000
	비타민A	1항목	74,900
	이산화황(SO ₂)	1항목	43,000
	붕산	1항목	20,000
	일산화탄소	1항목	6,000
나.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1항목	22,000
다. 중금속	수은	1항목	33,000
	카드뮴, 구리, 납	1항목	76,700
	아연	1항목	46,000
라 방사능	방사능	1항목	50,000
마. 세균	생균수,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1항목	13,000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1항목	15,000

구 분	검정항목	단위	수수료(원)
바.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정성)	1항목	20,000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정량)		40,000
사. 독성	복어독소, 패류독소	1항목	53,100
아.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1항목	100,000
자. 그 밖의 발급	검정증명서 사본	1부	50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신청서	21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21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272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272
[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	273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	273
[별지 제7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274
[별지 제8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275
[별지 제9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갱신)신청서	275
[별지 제10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276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277
[별지 제11호의2서식] 조사공무원증	277
[별지 제12호서식]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278
[별지 제13호서식]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	279
[별지 제14호서식]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	279
[별지 제15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280
[별지 제16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80
[별지 제17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281
[별지 제18호서식]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82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82
[별지 제20호서식]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	283

[별지 제21호서식]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283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84
[별지 제23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	284
[별지 제24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285
[별지 제25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285
[별지 제26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86
[별지 제27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86
[별지 제28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287
[별지 제29호서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 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서	288
[별지 제30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288
[별지 제31호서식]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289
[별지 제32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증	289
[별지 제33호서식] 지리적표시 원부	290
[별지 제34호서식] 심판청구서	291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사건 답변서	292
[별지 제36호서식] 심판 참가신청서	293
[별지 제37호서식]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	294
[별지 제38호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294
[별지 제39호서식] 심리 재개신청서	295
[별지 제40호서식] 재심청구서	295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96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96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㉞
[별지 제44호서식]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297
[별지 제45호서식]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298
[별지 제46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	299
[별지 제47호서식]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300
[별지 제48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301
[별지 제49호서식] 생산·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302
[별지 제50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303
[별지 제51호서식] 생산·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점검 신청서	304
[별지 제52호서식] 농산물 검사신청서	305
[별지 제53호서식] 꼬리표	306
[별지 제54호서식]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306
[별지 제55호서식]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307
[별지 제56호서식] 농산물검사관증	308
[별지 제57호서식] () 검사증명서	308
[별지 제58호서식]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310
[별지 제59호서식] (기관명)	310
[별지 제60호서식]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	311

[별지 제61호서식] 검사시료 수거증	31
[별지 제62호서식]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312
[별지 제63호서식] 검사 집행 상황부	313
[별지 제64호서식] 검사증서 발급대장	314
[별지 제65호서식]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315
[별지 제66호서식] 수산물검사관증	316
[별지 제67호서식]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	316
[별지 제68호 서식]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생(건강)증명서	317
[별지 제69호서식]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증명서	317
[별지 제70호서식]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증명서	318
[별지 제71호서식]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	318
[별지 제72호서식]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	319
[별지 제73호서식] [] 한글, [] 영문 검정신청서	319
[별지 제74호서식] 검정증명서	320
[별지 제75호서식]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320
[별지 제76호서식]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321
[별지 제77호서식] 검정기관 지정서	322
[별지 제78호서식]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322
[별지 제79호서식] 국가자격증	323
[별지 제80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323
[별지 제81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324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갱신: 1개월)
신청인	성명(단체명)	조직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톤)	농산물우수관리시설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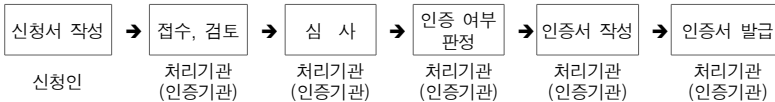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신규 신청 시)	1. 재배 예정농지 토지대장 1부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1부 3.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첨부서류 (갱신 신청 시)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1. 생산자(조직명): (농가 수: 명?)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품 목 명:
5. 재배면적(㎡):
6. 농장 소재지:
7. 유효기간:
8. 생산자별 재배 내용: 별도 붙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직인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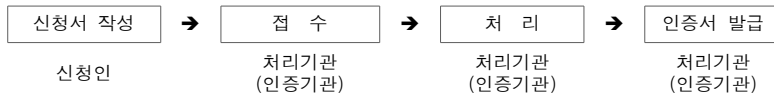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주소	전화번호

출하계획	품목(품종)	생산계획량(톤)	출하계획량(톤)	농산물우수 관리시설명

인증번호	연장기간
연장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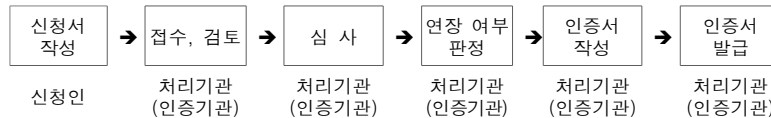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사	→	변경 여부 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연월일
설립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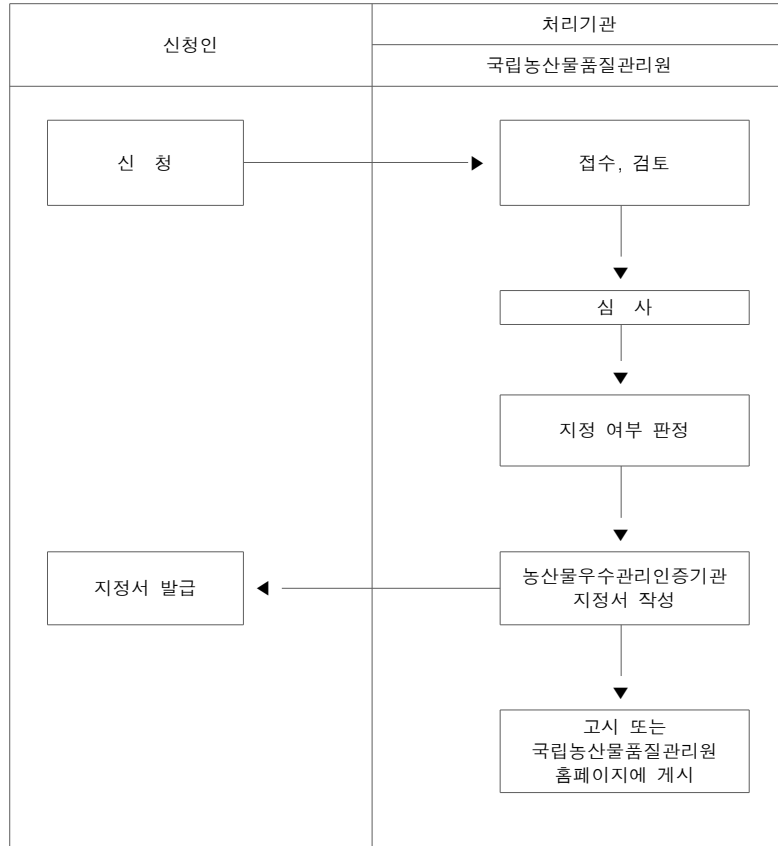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지정신청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1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0만원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서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4. 주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5. 지 정 일 :
6. 인증지역 :
7. 유효기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신고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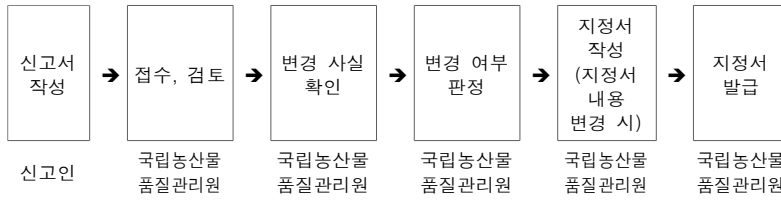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갱신)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	-----	----------

신청인	시설명	
	조직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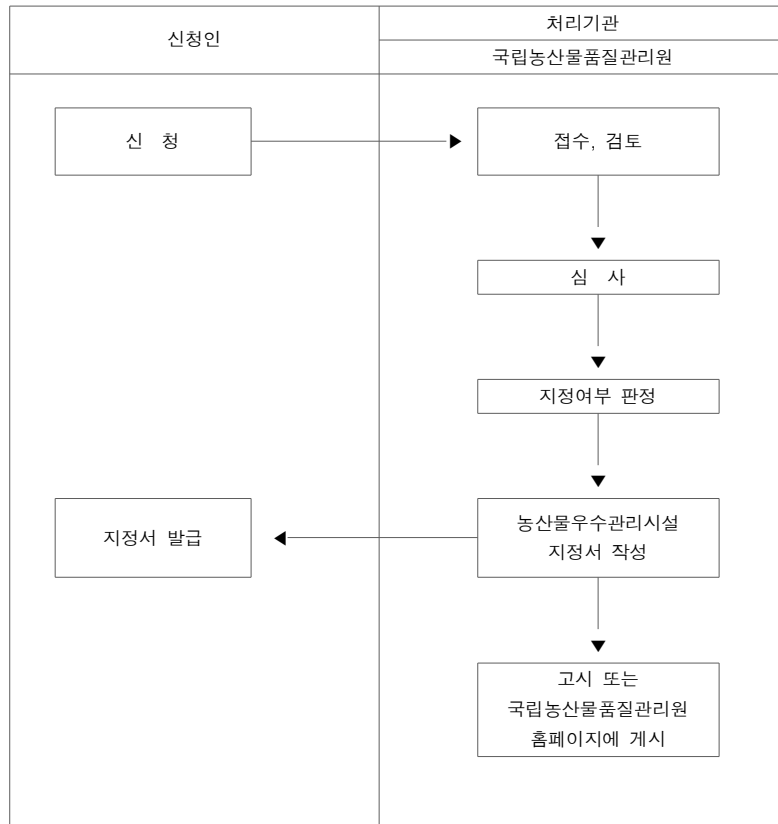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지정신청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1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시설명 : 2. 대 표 자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4. 품 목 : 5. 소 재 지 : 6. 지정일 : 7. 유효기간 :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합니다.</p>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시설명(시설지정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변경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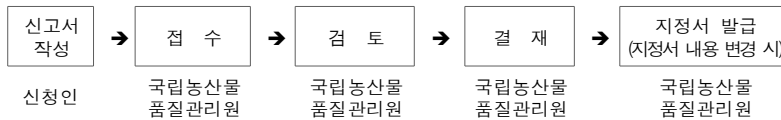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행 정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 120g/㎡]

(색상 : 연노랑색)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위 사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제4항·제19조제3항·제30조제3항·제39조제3항·제76조제5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람은 인증기관 등과 농수산물의 생산자·생산자단체·판매업자·보관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업장·창고·서류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연장)신청서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양식기간)	출하기간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톤	
	포장(공장·양식장) 소재지		

인증신청 내용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수산물)의 품질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수수료 3만원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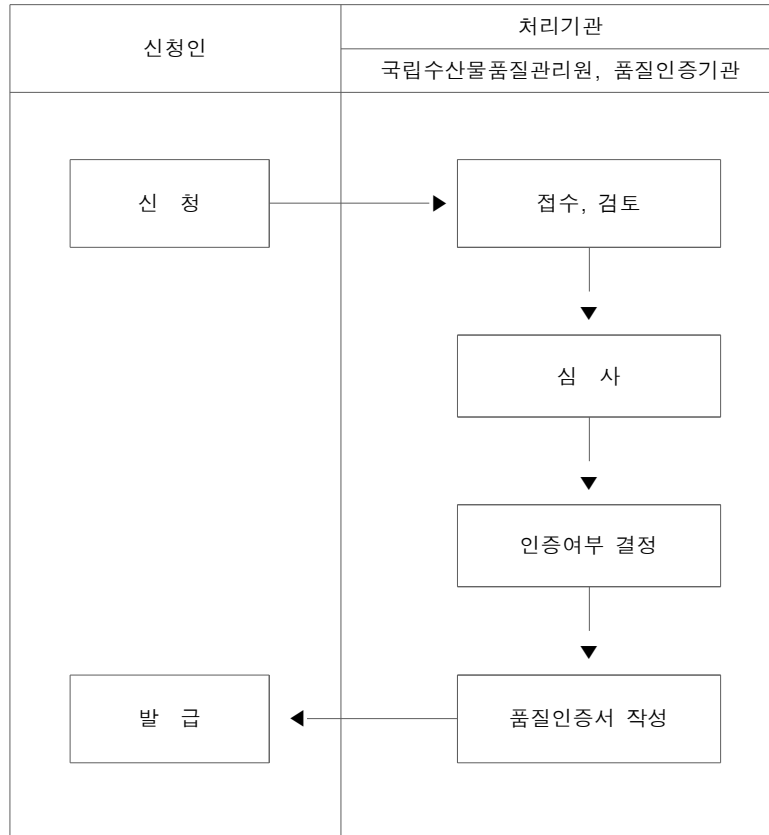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연장신청 시 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

- 1. 인증번호 :
- 2. 생 산 자 :
- 3. 주 소 :
- 4. 품목(품종) :
- 5. 인증항목 :
- 6. 유효기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210mm×297mm [백상지 12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증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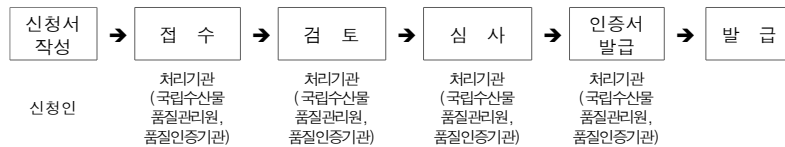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손상된 농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3.24>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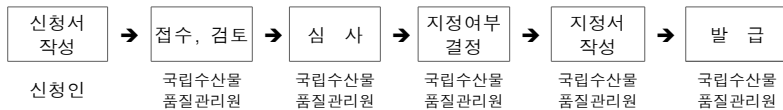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4>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생년월일 :)
3. 소재지 :
4. 지정일 :
5. 인증업무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수산물특산물)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 서식] 삭제 <201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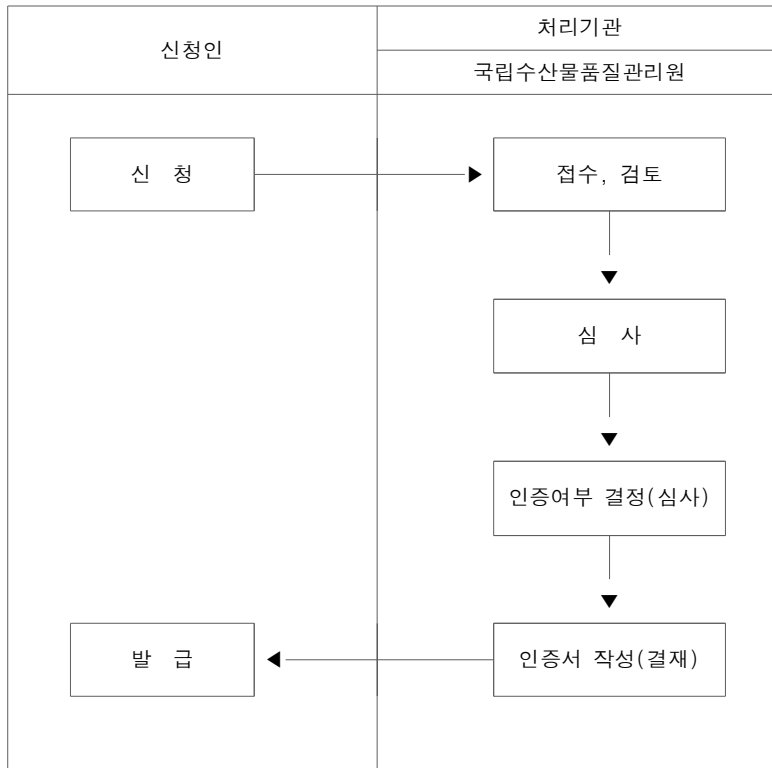
(뒤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

1. 생 산 자 :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 주 소 :
4. 품목(품종) :
5. 유효기간 :
6. 양식장(가공공장) 소재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 []수산가공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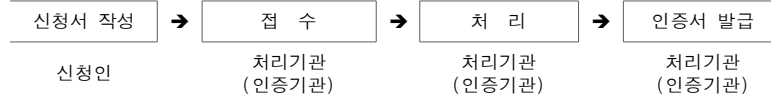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손상된 친환경 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서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2012.11.1>

[별지 제23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갱신:1개월)
신청인	단체명(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품목(품종) ※ 농수산물은 생산자만 해당합니다.

관리단계(해당 단계에 '○' 로 표시합니다)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유통단계	판매단계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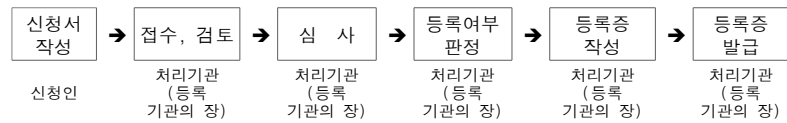
등록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유통자·판매자로 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 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 관리단계 :
2. 신청인(조직명) : (농가 수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4. 주 소 :
5. 품 목 명 :
6. 유효기간 :
7. 생산자별 재배 내용: 별도 붙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이력제
Seafood Traceability System

제 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 성 명(단체 또는 조직명) : (구성원 수 : 명)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 주 소 :
4. 품 목 명 :
5. 유효기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6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농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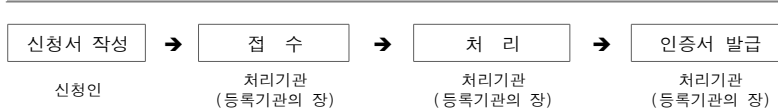
등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유통자·판매자로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7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기존 내용	변경된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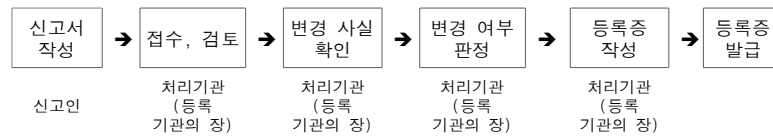
등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 2.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유통자·판매자로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단체명(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품목(품종)	※ 농산물은 생산자만 해당합니다.		
등록번호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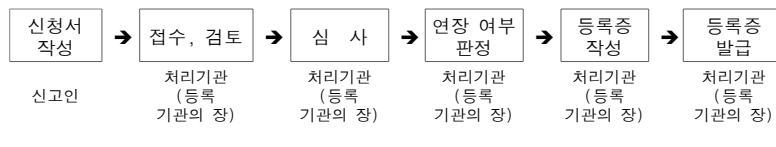
등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유통자·판매자로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3.2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 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기관명(시설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 연월일			
업무의 범위			
지정번호			
승계 사유	[] 합병 [] 상속 [] 양수 [] 그 밖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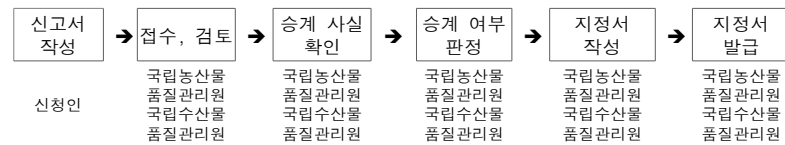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4>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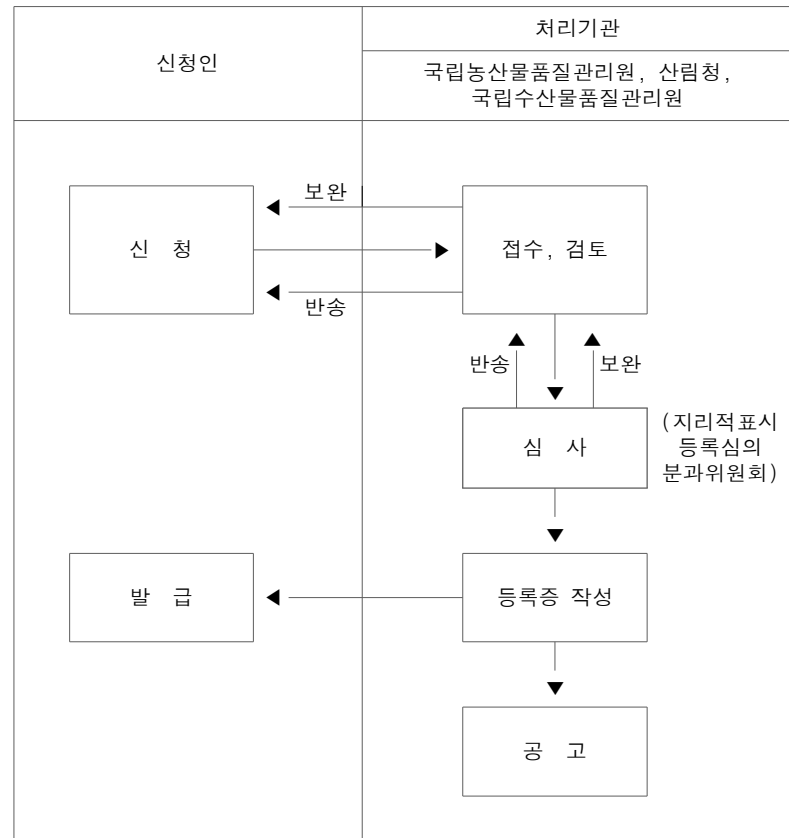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1년, 변경 90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변경신청 시 등록품목과 등록번호를 본란에 기재		
등록신청 내용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지역		
	생산량	M/T	
포장 또는 가공공장 소재지			
변경신청 내용	기존 내용	변경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	한글명		
	영문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산림청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7. 자체품질기준 1부 8. 품질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건당 10만원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첨부서류 (등록변경신청)	변경 사유 및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3.24>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품목명	등록신청 공고번호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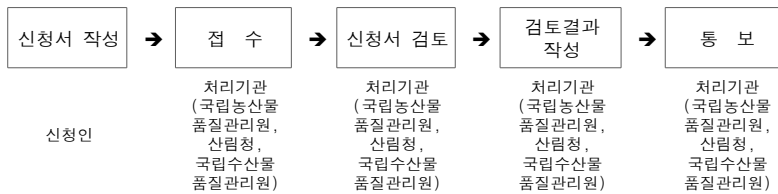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산림청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 및 증거자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4>



지리적표시 등록증 CERTIFICATION OF KORE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1.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2. 등록품목
(TYPE OF PRODUCTS)
3. 등록 명칭
(REGISTRATION NAME)
○ 한글 : (IN KOREAN)
○ 영문 : (IN ENGLISH)
4. 대상지역
(RANGE OF PRODUCTION)
5. 등록자
(REGISTRANT)
6. 주소
(ADDRESS OF REGISTRAN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Kore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s registered according to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CHIEF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직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CHIEF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직인

산림청장
COMMISSIONER, THE KOREA FOREST SERVICE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지리적표시 원부

(앞 쪽)

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림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등록 제000호
------	---

[등록사항]

품 목	
등록 명칭	한글
	영문
	한자
등록일	
대상지역의 범위	
등록자	
주 소	

등록사항의 이전 및 변경란

[등록자]

(최초 등록자)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 ※ ① 최초 등록자란에는 등록 당시의 법인명(등록 연월일)을 기록하되, 법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 ② 등록사항에는 등록자의 변경사항과 변경된 연월일을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최초 대상지역)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① 최초 대상지역란에는 등록 당시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을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 ② 등록사항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의 변경사항과 변경된 연월일을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최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 ※ ① 최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란에는 등록당시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 ② 등록사항란에는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과 변경된 연월일을 기록하되,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등록사항의 소멸 및 회복란

[지리적표시 권한의 일시정지, 무효 및 취소 확정]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 ※ 행정처분 및 심판(재심을 포함한다)에 의한 지리적표시권의 일시정지 또는 소멸사항을 기록하고 그 시작 연월일을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지리적표시 권한의 회복]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 ※ 지리적표시 권한의 일시정지, 무효 및 취소의 사유와 시작일을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회복된 사유와 회복일을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사건 답변서

(앞 쪽)

피청구인 (답변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답변서 제출 마감일	
답변 내용	
증거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심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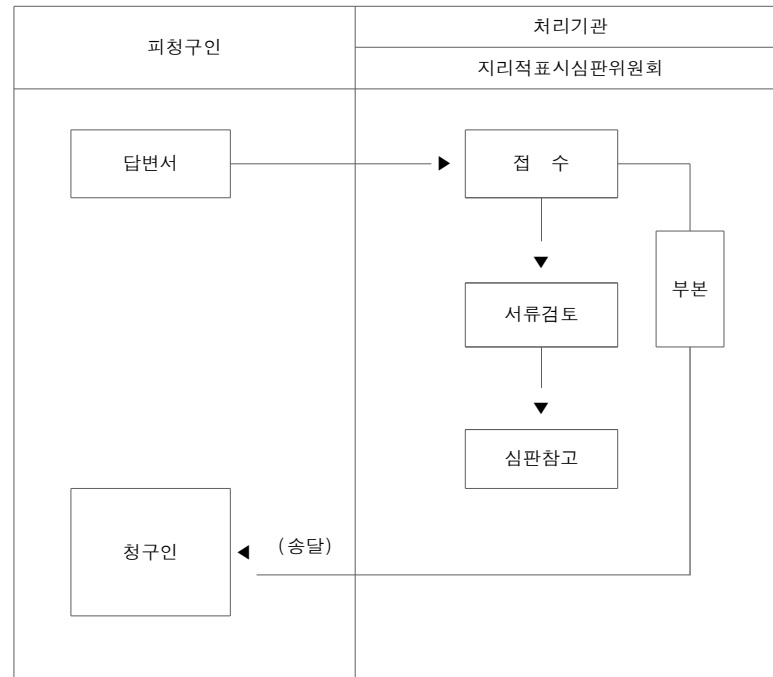
제출 서류	1. 답변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심판 참가신청서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참가의 이유		
참가의 종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심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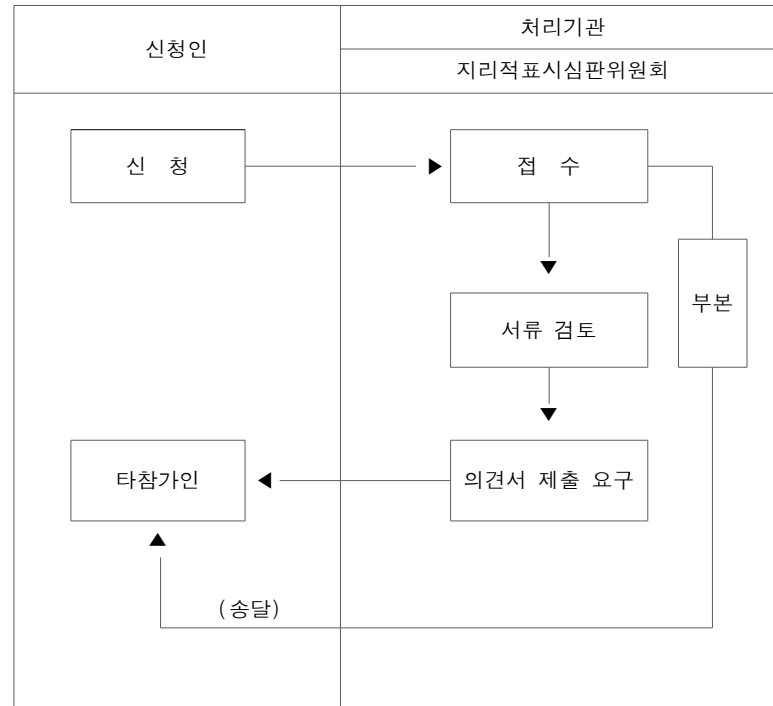
제출 서류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심판번호			
통지사항	통지받은 날짜		
	제출 마감일		
의견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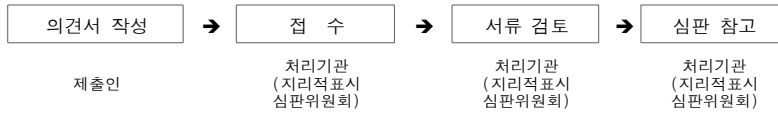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심판장 귀하

제출 서류	1. 의견서 부분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8호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			
심판청구 취하의 요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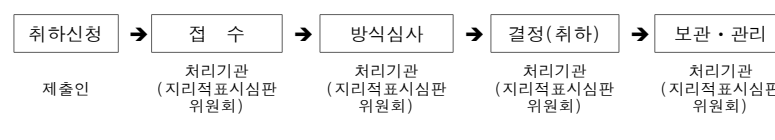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심판장 귀하

제출 서류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9호서식]

심리 재개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심 판 번 호	심리 종결 통지일
심리 재개의 취지	
심리 재개의 이유	
증 거 방 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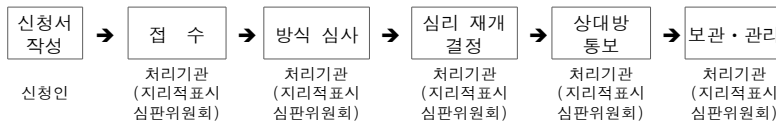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심판장 귀하

제출 서류	1. 신청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0호서식]

재심청구서

(앞 쪽)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번호	심결 또는 결정송달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 거 방 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원결확정일	재심 사유를 안 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 서류	1. 청구서 부분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1부	수수료 건당 17만원 (온라인 15만원) (뒤쪽에 수입인지붙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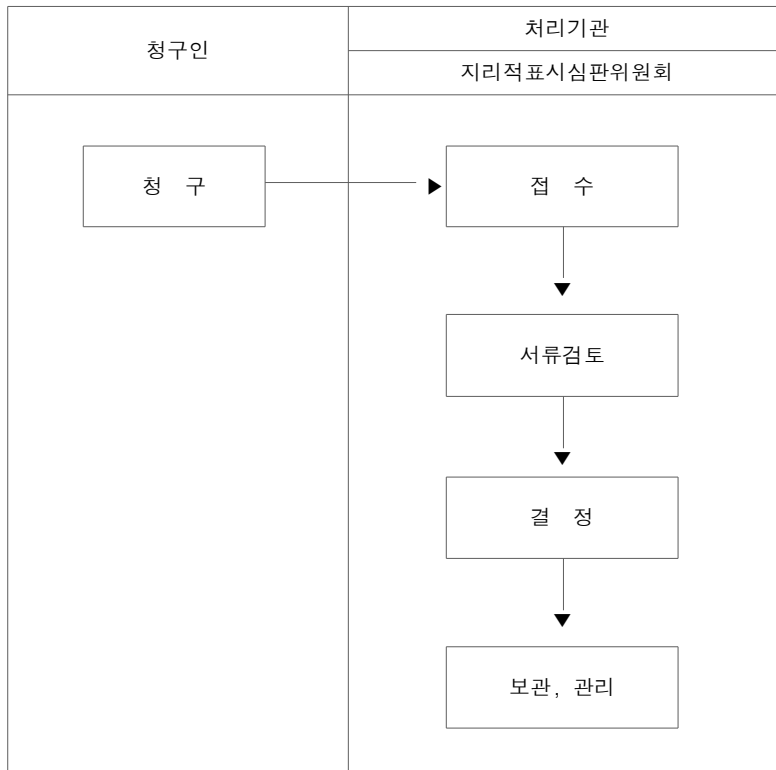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13.3.24>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13.3.24>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3.3.2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HACCP COMPLIANCE CERTIFICATE

발행번호 Serial No. : _____ 발행일 Date : _____
 신청인 Applicant : _____
 주소 Address : _____

아래의 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및 위생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생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verify that the HACCP and sanitary programs are implemented by the company in the production of the following fishery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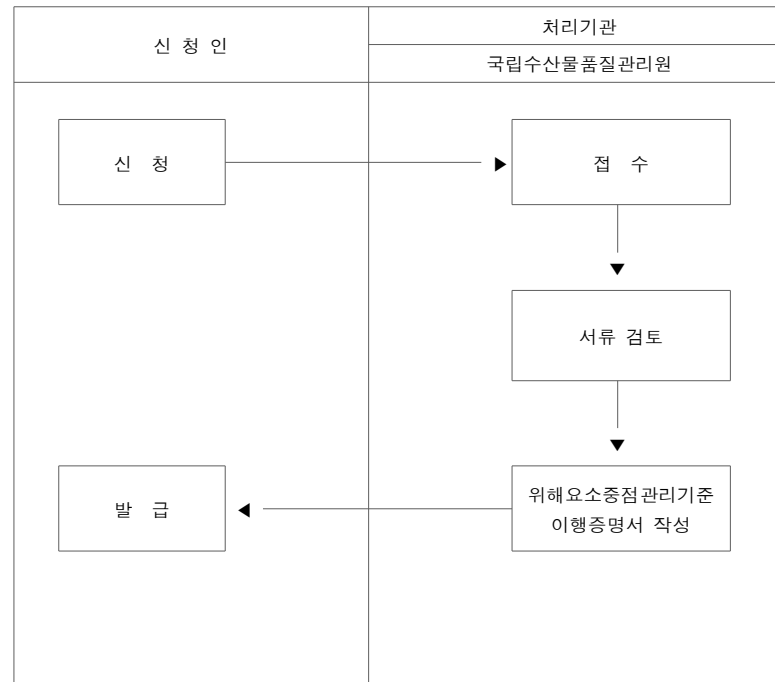
품명 Commodity : _____
 수량 Quantity : _____
 포장 Packing : _____
 생산지 Produced Distric : _____
 생산기간 Produced Term(Date) : _____
 수입자 주소 Importer Address : _____
 성명(회사) Name(Company) : _____

Stamp : _____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4>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식시설: 7일)
신청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 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총 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의 합계(㎡)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어업·수산물가공업의 면허 등의 번호	주요 기기 및 시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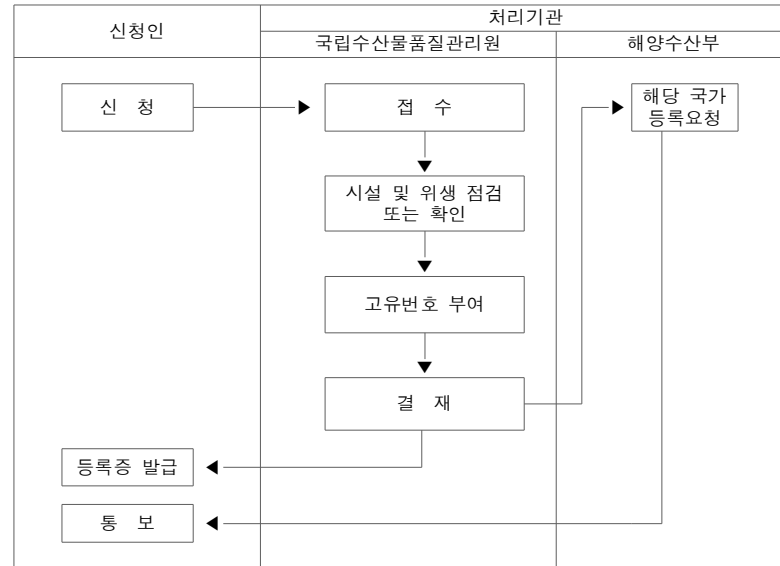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신청인 첨부서류 (양식시설인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1부 3.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1부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 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을 제외합니다)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 법 제69조외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 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7.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인증서류(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3.3.24>

생산·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 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 총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의 합계(㎡)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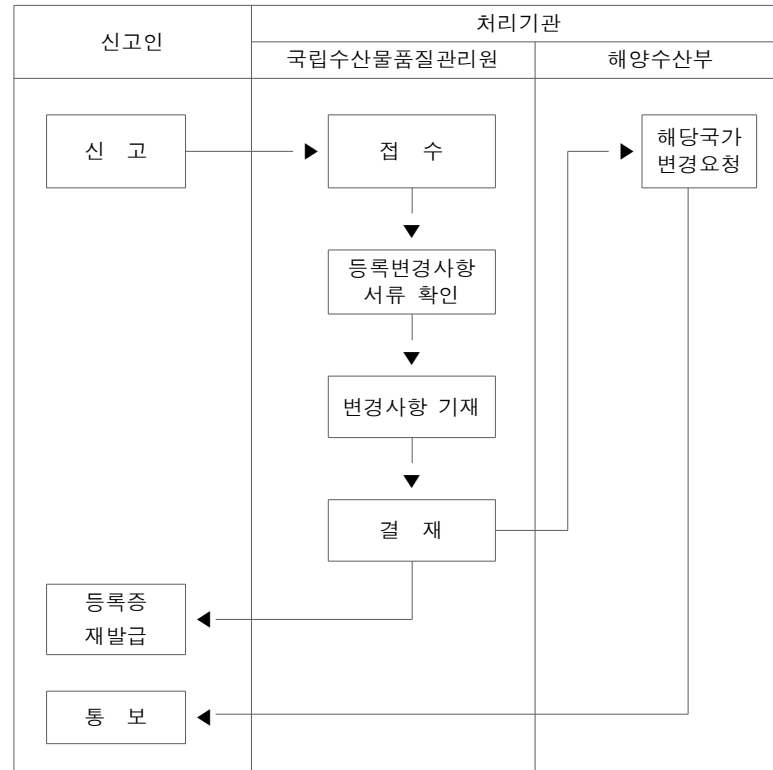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생산·가공시설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3.3.2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 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 총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의 합계(㎡)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른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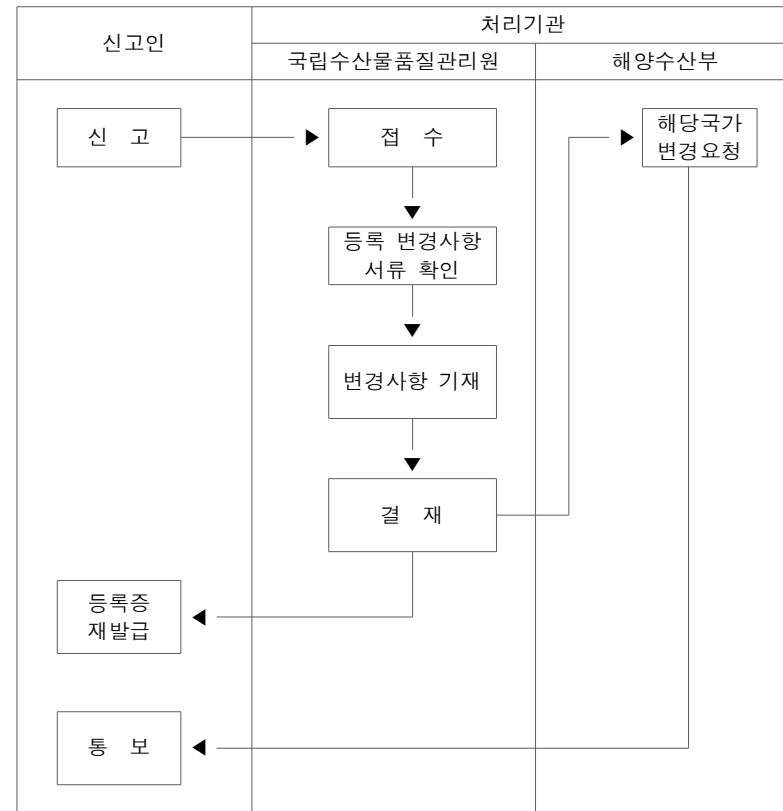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3.3.24>

생산·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점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여권) 또는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조사 관련 통지사항	일시	장소
	목적	내용
	조사기관	담당자
	법적 근거	

공동 조사·점검 신청 사유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 조사·점검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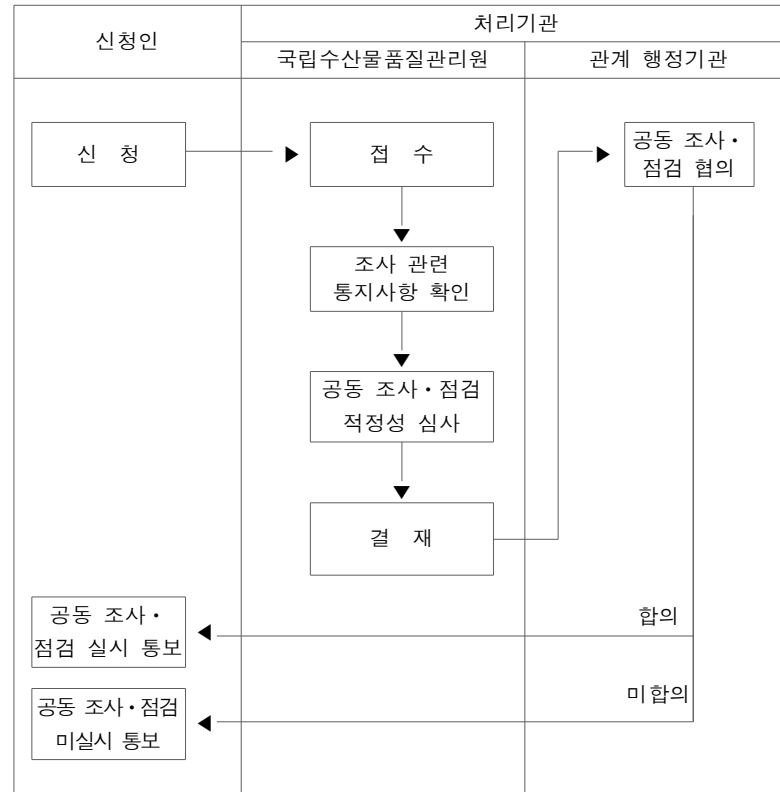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2호서식]

농산물 검사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	포장구분	포장단위 무게	수량	검사회망일	검사 희망장소

비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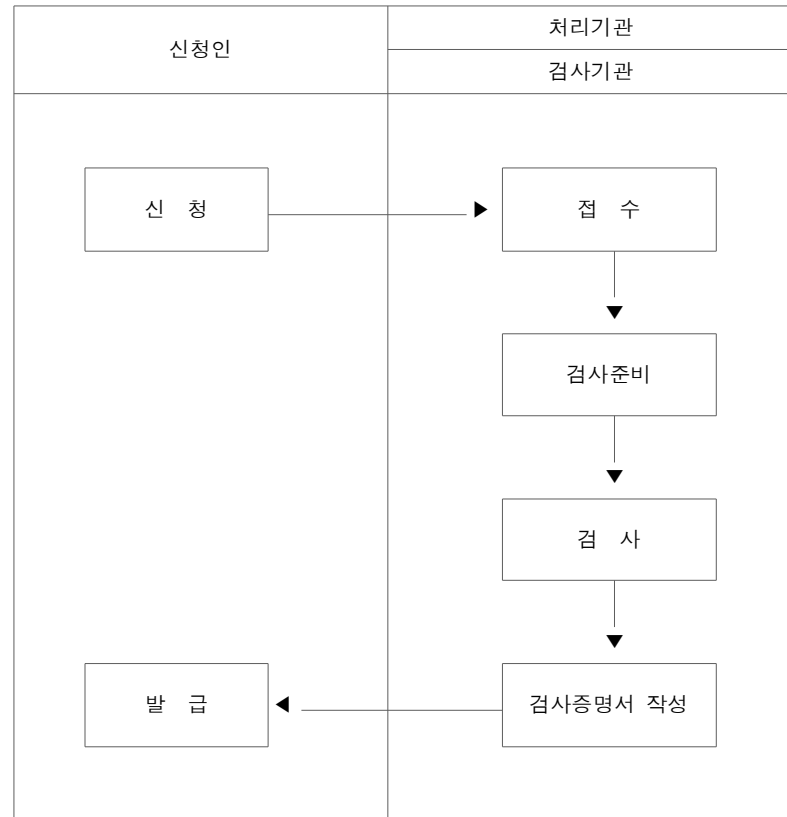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5호서식]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검사관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임용 연월일	현 근무지	자격취득 근거					자격취소 근거					확인
							곡류	과실· 채소류	특작· 서류	종자류	잡사류	곡류	과실· 채소류	특작· 서류	종자류	잡사류	
주) 1. 검사관 번호는 검사기관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2. 소속, 직급, 근무지란은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필로 기재한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자격취득근거와 날짜를 기재한다. 4.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취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란에 <input type="checkbox"/> 또는 서명한다.																	

364mm×257mm[백상지 120g/m²]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p>제 호</p> <h2 style="margin: 0;">농산물검사관증</h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5px auto;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p>사 진</p><p>3cm × 4cm</p><p>(모자를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div> <p style="margin-top: 10px;">성 명</p> <p>행정기관명</p> <p style="font-size: small;">60mm×90mm [백상지 120g/㎡]</p>
--

(색상: 연노랑색)

(뒤 쪽)

<h2 style="margin: 0;">농산물검사관증</h2> <p>소속/직급 : 성 명 : 검사관번호 : 자격구분 :</p> <p>위 사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장명의 직인</p> <p style="font-size: x-small;">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
--

[별지 제57호서식]

1. 일반농산물

(1면)

<p>제 호</p> <h2 style="margin: 0;">() 검사증명서</h2>					
수검자	성명 주소				
구분	포장단위 무게	등급별 수량			비고
				계	
합계					
<p style="text-align: center;">「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관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 [백상지 80g/㎡]

2. 수출용농산물

(2면)

제 호 수출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수검자(Applicant)	생산지(Area of product)
	수출지(Destination)
L/C 번호(L/C No.)	품목(Kind)
E/L 번호(E/L No.)	규격(Specification)
검사기관(Inspector authorized)	수량(Quantity)
합격증 번호(Certificate No.)	등급(Inspection result)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have been passed in the export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4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Article 10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Date) (Certificated by)</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문 표기)</p>	

210mm×297mm[백상지 80g/㎡]

3. 수입농산물

(3면)

제 호 수입검사증명서			
수검자	업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목	원산지	포장자재 및 포장단위무게	신청수량
적재선(적재기)명	검사 장소	검사일	검사관
검사 결과 내용			
등급별 수량			비 고
		계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p>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8호서식]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사 품목	
검사 등급 (검사내용)	
검사 수량	
검사 연월일	
검사관 성명 또는 검사관 번호	
이의신청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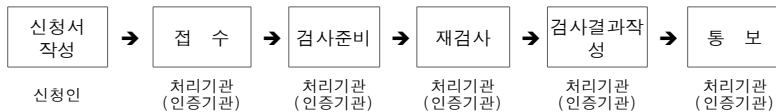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9호서식]

(기관명)

우○○○-○○○주소 /전화번호(○○○)○○○-○○○○/전송(○○○)○○○-○○○○
 담당부서명: 직위 또는 직급 : 담당자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신 :
- 제목 : 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인	성명			
	주소			
품목	신청 수량	이의신청 내용		검사결과
		등급	그 밖의 내용	

끝.

○ ○ ○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수산물가공품 (재)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정밀검사시:7일)						
신청인	업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검사대상 수산물	품명	개수	중량	포장의 종류	1개의 내용량	생산자	생산지	목적지	가격
	검사(생략) 받으려는 항목			검사 희망일 (장소)		발급 받으려는 증명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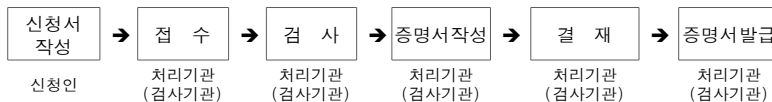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1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의 생산·가공 일지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1부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1호서식]

검사시료 수거증

검사신청번호 :

수거 장소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거 일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품명	
수거 수량	
수거 사유	
입 회 자	소속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수거자 소속 : _____ 년 월 일
성 명 _____ (서명 또는 인)

105mm×149mm[백상지 80g/㎡]

[별지 제62호서식]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업체명	품명	수량		담당자	비고
		대표자		개수	중량		
		주소					

[별지 제63호서식]

검사 집행 상황부

신청 번호	신청인	신청 개수· 중량	성적별수량								현품 부재	검사일	검사관	증명서 번호	용도	수출 수입지	비고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합격	불합격	그 밖의 성적							
신청 일	품명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4호서식]

검사증서 발급대장										
발행 번호	발행일	품명	검사결과	개수 · 중량	검사일	주소	성명	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비고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검사희망기관명(단체명)						
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	검사 관할지역	검사 장소수	검사 예상량	검사 기간	검사 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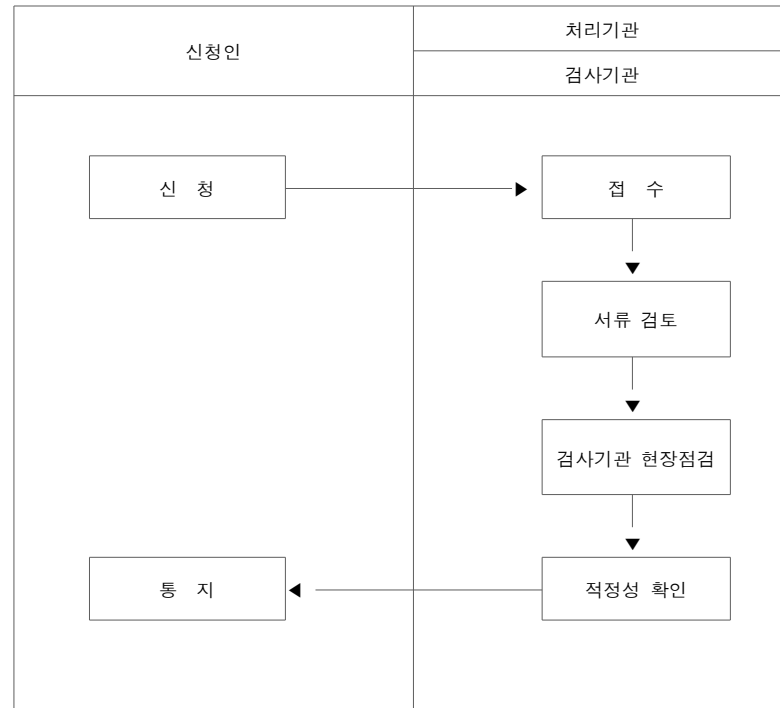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3.3.24>

(색상 : 연하늘색)

(앞 쪽) (뒤 쪽)

수산물검사관증
<p>사 진 5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번호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55mm × 80mm
(백상지 120g/㎡)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3.3.2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수산물 · 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OF FISHERY PRODUCTS				
발행번호 Serial No. _____				
신청인 Applicant	성명 Name 주소 Address			
검사항목 Item of Inspection	생산지 Area of Products	목적지 Destination		
품명 Commodity	등급 Grade	수량 Quantity	1개의 내용량 Net Wt. Per Each	비고 Remarks
검사일 Date of Inspection	포장의 종류 Packing			
위의 수산물은 위생적으로 생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ishery products specified above have produced and/or processed under sanitary conditions and passed the test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발행일 Date : 년 월 일				
Stamp :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Chief of Appointed Fishery products Inspection Agency				

210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68호 서식] <개정 2013.3.2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위생(건강)증명서
SANITARY(HEALTH) CERTIFICATE

발행번호 _____ 발행일 _____
 Serial No.: _____ Date : _____
 신청인 _____
 Applicant: _____
 주소 _____
 Address: _____

아래의 수산물은 위생적으로 생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fishery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or processed under sanitary conditions and passed the test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품명 _____
 Commodity : _____
 포장 _____
 Packing : _____
 등급 _____
 Grade : _____
 수량 _____
 Quantity : _____
 생산지 _____
 Produced District : _____
 증명내용 _____
 Contents of certification : _____

Stamp : _____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3.3.2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분석증명서
ANALYSIS CERTIFICATE

발행번호 _____ 발행일 _____
 Serial No.: _____ Date : _____
 신청인 _____
 Applicant : _____
 주소 _____
 Address : _____

아래의 수산물은 위생적으로 생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사
 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fishery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or processed under sanitary conditions and passed the test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품명 _____
 Commodity : _____
 포장 _____
 Packing : _____
 등급 _____
 Grade : _____
 수량 _____
 Quantity : _____
 생산지 _____
 Produced District : _____
 증명내용 _____
 Contents of Certification : _____

Stamp : _____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3.3.2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발행번호 Serial No. : _____	발행일 Date : _____
Export Company(수출회사)	
Name and Representative(회사명 및 대표자)	
Address(수출회사 주소)	
Import Company(수입회사)	
Name and Representative(회사명 및 대표자)	
Address(수입회사 주소)	
Contents of Certification	
Commodity(품명)	
Quantity(수량)	
Lot Number of Export(수출로트번호)	
Culture Area(Registered Farm Number) 생산해역(양식장등록번호)	
Processor(Registered Number) 가공공장(등록번호)	
Date of Production(수거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statement is correct.	
Stamp :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사증명서의 종류			
검사증명서 번호			발급 연월일
검사증명서 발급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분실일			
분실 장소			
분실 사유	※ 분실사유서 별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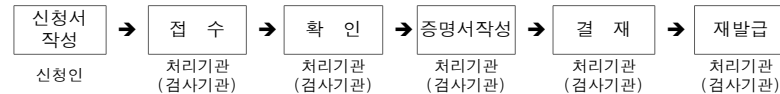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받으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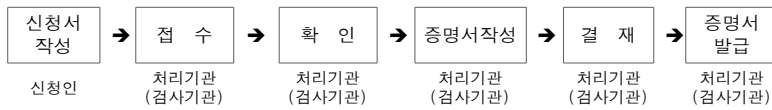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3호서식]

[] 한글 [] 영문 검정신청서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 품목	
시료 접수 및 중량	
산지 및 생산자	
수거 연월일	
검정항목	
검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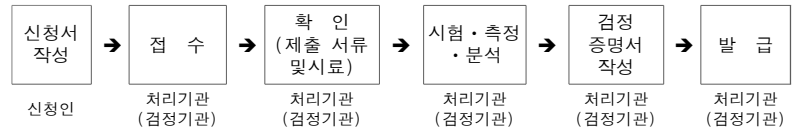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위 품목에 대한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 첨부 : 검정용 시료 * 영문증명서 필요시 해당 언어로 함께 표시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Certificate Number:)	
검정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Name/Organization)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I.D. number)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검정 품목 (Name of Product)	
시료 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	
검정항목 (Analyzed Items)	
검정 목적 (Analytical purpose)	
검정 결과 (Analytical Results)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한 시료에 대한 검정성적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samples have been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8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Article 12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년 월 일 Date of Issue: moon. day. year	
○ ○ ○ 장 직인	
예시) Chief of 000 Provincial Office [seal]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3.3.24>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검정 희망 기관명(단체명)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업무 범위	<input type="checkbox"/> 품위 · 일반성분 검정 <input type="checkbox"/> 무기성분 · 유해물질 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각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
4. 업무 범위 :
5. 지정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13.3.24>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기관 명칭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실험실	전화번호
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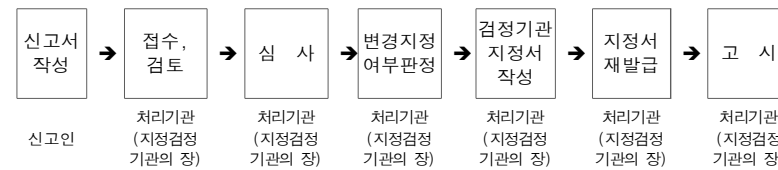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기관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